

한-호주 FTA협정 원산지 규정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1부 산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01류-제05류)	
01	제1류 산 동물	
0101	살아있는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0101.2	말	
0101.21	순종 교배용 동물	완전생산기준
0101.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1.30	당나귀	완전생산기준
01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	살아있는 소	
0102.2	축우	
0102.21	순종 교배용 동물	완전생산기준
01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3	버팔로	
0102.31	순종 교배용 동물	완전생산기준
01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3	살아있는 돼지	
0103.10	순종 교배용 동물	완전생산기준
0103.9	기타	
0103.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3.92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4	살아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	면양	완전생산기준
0104.20	산양	완전생산기준
0105	살아있는 가금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105.1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12	칠면조	완전생산기준
0105.13	오리	완전생산기준
0105.14	거위	완전생산기준
0105.15	기니아새	완전생산기준
0105.9	기타	
0105.94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	기타의 산 동물	
0106.1	포유동물	
0106.11	영장류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106.12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완전생산기준
0106.13	낙타 및 기타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과)	완전생산기준
0106.14	토끼	완전생산기준
01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	조류	
0106.31	맹금류	완전생산기준
0106.32	앵무류(패로트류 · 파라키트류 ·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3	타조, 에뮤(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	완전생산기준
0106.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4	곤충류	
0106.41	벌	완전생산기준
0106.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	제2류 육과 식용 설육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1.2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1.30	뼈 없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2.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2.2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2.30	뼈 없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1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3.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3.2	냉동한 것	
0203.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3.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4	면양 또는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1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4.2	기타 면양의 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4.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4.22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4.23	뼈 없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4.3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에 한한 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4.4	기타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4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4.42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4.43	뼈 없는 것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4.50	산양의 고기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5.00	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6	식용 설육(脣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1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6.2	소의 것(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21	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6.22	간(肝)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6.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6.3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6.4	돼지의 것(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41	간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6.4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6.8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6.9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207.1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1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13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14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2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25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26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27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4	오리의 것	
0207.4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4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43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44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45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5	거위의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207.5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5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53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54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55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7.60	기니아새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8.10	토끼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8.30	영장류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8.4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8.5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8.60	낙타 및 기타 낙타과(카멜리대과)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8.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09.10	돼지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0209.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10	육과 식용 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210.1	돼지고기	
0210.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10.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10.20	쇠고기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10.9	기타(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0210.91	염장류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10.9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10.93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210.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는 제외한다)
03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301	활어	
0301.1	관상용의 것	
0301.11	민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3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1.9	기타의 활어	
0301.91	송어(살모 트루타·양코링쿠스 미키스·양코링쿠스 클라키·양코 링쿠스 아구아보니타·양코링쿠스 길래·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1.92	뱀장어(앵굴라종)	완전생산기준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 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 돈 피세우스)	완전생산기준
0301.94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 엔탈리스)	완전생산기준
0301.95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완전생산기준
03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2.1	연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11	송어(살모 트루타·양코링쿠스 미키스·양코링쿠스 클라키·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양코링쿠스 길래·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완전생산기준
0302.13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양코링쿠스 게타·양코링쿠스 차비차·양코링쿠스 키수츠·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완전생산기준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완전생산기준
03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2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바디대과·사이노글로시대과·솔레이대과·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21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완전생산기준
0302.2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완전생산기준
0302.23	서대(솔레아종)	완전생산기준
0302.24	터벗(프세타 맥시마)	완전생산기준
03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3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한다)·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3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완전생산기준
0302.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완전생산기준
0302.3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완전생산기준
0302.3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완전생산기준
0302.35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 엔탈리스)	완전생산기준
0302.3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완전생산기준
03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4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멸치(엔그라울리스종)·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전갱이(트라커러스종)·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및 황새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4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완전생산기준
0302.42	멸치(엔그라울리스 종)	완전생산기준
0302.4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팅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완전생산기준
0302.4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완전생산기준
0302.45	전갱이(트라커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4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완전생산기준
0302.4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완전생산기준
0302.5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51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완전생산기준
0302.5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완전생산기준
0302.5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완전생산기준
0302.54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5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완전생산기준
0302.56	블루 화이팅스(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완전생산기준
0302.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7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귌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7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72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73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 씨리누스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완전생산기준
0302.74	뱀장어(앵귌라종)	완전생산기준
0302.7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8	기타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2.81	곱상어와 기타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2.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과)	완전생산기준
0302.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85	돔(스파리대과)	완전생산기준
0302.8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90	간과 어란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1	연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완전생산기준
0303.12	기타의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양코링쿠스 게타 · 양코링쿠스 차비차 · 양코링쿠스 키수츠 ·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완전생산기준
0303.13	대서양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완전생산기준
0303.14	송어(살모 트루타·양코링쿠스 미키스 · 양코링쿠스 클라키 ·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양코링쿠스 길래 ·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완전생산기준
03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2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 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귌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2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24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25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 씨리누스 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완전생산기준
0303.26	뱀장어(앵귌라종)	완전생산기준
03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3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크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31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완전생산기준
0303.3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완전생산기준
0303.33	서대(솔레아종)	완전생산기준
0303.34	터벗(프세타 맥시마)	완전생산기준
030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4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4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완전생산기준
0303.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완전생산기준
0303.4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완전생산기준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완전생산기준
0303.45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완전생산기준
0303.4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완전생산기준
0303.49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3.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 전갱이(트라커러스종) ·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5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완전생산기준
0303.5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완전생산기준
0303.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 스�콤버 자포니쿠스)	완전생산기준
0303.55	전갱이(트라커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56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	완전생산기준
0303.5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완전생산기준
0303.6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63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완전생산기준
0303.64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완전생산기준
0303.65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완전생산기준
0303.66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완전생산기준
0303.68	블루 화이팅스(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완전생산기준
0303.6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8	기타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81	곱상어와 기타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3.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과)	완전생산기준
0303.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84	농어(디센트라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8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90	간과 어란	완전생산기준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귌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의 신선 또는 냉장한 피레트	
0304.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4.32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3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4	기타 어류의 신선 또는 냉장한 피레트	
0304.41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 ·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양코링쿠스 게타 · 양코링쿠스 차비차 · 양코링쿠스 키수츠 ·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42	송어(살모 트루타 · 양코링쿠스 미키스 · 양코링쿠스 클라키 ·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양코링쿠스 길래 ·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43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44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46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4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5	기타,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4.5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 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굴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52	연어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53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5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5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5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4.6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귌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의 냉동한 피레트	
0304.6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62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6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6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7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의 냉동한 피레트	
0304.71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7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7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74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7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7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8	기타 어류의 냉동한 피레트	
0304.81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 ·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양코링쿠스 게타 · 양코링쿠스 차비차 · 양코링쿠스 키수츠 ·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82	송어(살모 트루타 · 양코링쿠스 미키스 · 양코링쿠스 클라키 ·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양코링쿠스 길래 ·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83	넙치류(플루로벙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8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8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0304.86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87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8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9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9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귌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94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95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를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4.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10	어류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 · 훈제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3	어류의 피레트(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귌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32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5.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4	훈제한 어류(피레트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설육을 제외한다)	
0305.41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케타 · 앙코링쿠스 차비차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43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4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귌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4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5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을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51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5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6	건조 또는 훈제하지 않은 염장한 어류 및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을 제외한다)	
0305.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62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63	멸치(엔그로리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6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귌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6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7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위 및 기타 식용 어류 설육	
0305.71	상어 지느러미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0305.72	어류의 머리 · 꼬리 · 위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5.7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 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 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갑각류의 분 · 조분과 펠리트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1	냉동한 것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14	게	완전생산기준
0306.1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	완전생산기준
0306.16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종, 크란곤 크란곤)	완전생산기준
0306.17	기타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1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 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6.2	냉동하지 아니한 것	
0306.2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2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24	게	완전생산기준
0306.2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6.26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종, 크란곤 크란곤)	완전생산기준
0306.27	기타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2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 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훈 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훈제과정 이 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연체 동물의 분 ·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7.1	굴	
0307.1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 · 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3	홍합(미틸루스종 · 페르나종)	
0307.3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 로시아 마크로소마 · 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 로리고종 · 노토토다루스종 · 세피오 투디스종)	
0307.4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5	문어(옥토퍼스종)	
0307.5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7.7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아르치대과 · 아르크티치대과 · 카르디대과 · 도나치대과 · 히아텔리대과 · 마르크트리대과 · 메소데스마티대과 · 마이이대과 · 세멜리대과 · 솔레쿠르티대과 · 솔레니대과 · 트리다크니대과 및 베네리대과)	
0307.7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7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7.8	전복(할리오티스종)	
0307.8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8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7.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7.9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8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의 분 ·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0308.1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 홀로투리오이대과)	
0308.1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8.2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종 · 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 · 록세치누스 알버스 · 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	
0308.2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8.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308.30	해파리(로필레마종)	완전생산기준
03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1.1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2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고 6퍼센트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4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를 초과하고 10퍼센트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5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2.10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퍼센트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2.2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0402.21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2.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2.9	기타	
0402.91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2.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기타 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일 또는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3.10	요구르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3.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5.10	버터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5.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6	치즈와 커드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 은 제외한다)
0406.2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6.4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6.90	기타 치즈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7.1	부화용 수정란	
0407.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2	기타의 신선란	
0407.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찌거나 삶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8.1	난황	
0408.1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8.9	기타	
0408.9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9.00	천연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5	제5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501.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 웨이스트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0502.1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완전생산기준
0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4.00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 한다)
0505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 우모와 우모의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새의 솜털(청정, 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우모 및 우모의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	
0505.10	솜털, 충전재용 깃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505.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6.1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 한다)
0506.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 한다)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10	아이보리,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완전생산기준
0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완전생산기준
0510.00	용연향·해리향·시빛과 사향, 캔대리디즈, 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 것에 한한다)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511.10	소의 정액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511.9	기타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511.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제2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06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1.10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 및 접수, 버섯의 종균	
0602.10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완전생산기준
0602.20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일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진달래 속의 식물 및 철쭉(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3.1	신선한 것	
0603.11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5	백합(릴리움종)	완전생산기준
06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 또는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종류의 상품에 한한다)	
0604.2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1.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07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2.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10	양파와 쪽파	완전생산기준
0703.20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및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10	꽃양배추 및 절구된 브로콜리	완전생산기준
0704.20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1	상추	
0705.11	결구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2	치커리	
0705.21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 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완전생산기준
07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샐러리악·무 및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10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7.00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10	완두(피섬 새티범)	완전생산기준
0708.20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708.90	기타 채두류	완전생산기준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20	아스파라거스	완전생산기준
0709.30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샐러리(샐러리악을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709.5	버섯과 송로	
0709.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09.9	기타	
0709.91	구상의 양영경귀	완전생산기준
0709.92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09.93	호박류(쿠쿠르비타종)	완전생산기준
07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0.10	감자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0.2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한다)	
0710.21	완두(피섬 새티범)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0.22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0.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0.30	시금치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0.40	스위트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0.80	기타 채소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0.90	채소류의 혼합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1.20	올리브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1.40	오이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1.5	버섯과 송로	
0711.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1.5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1.90	기타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2.20	양파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2.3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트레멜라종) 및 송로	
0712.3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2.32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2.33	젤리균류(트레멜라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2.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2.90	기타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3.10	완두(피섬새티범)	완전생산기준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	완전생산기준
0713.3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0713.31	녹두[비그나 멩고(엘) 헤파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월크잭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팥(아주기)(파세러스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	완전생산기준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	완전생산기준
0713.34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 또는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	완전생산기준
0713.35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	완전생산기준
071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3.40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와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완전생산기준
0713.6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	완전생산기준
071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 · 칩뿌리 · 샬렘 · 국아 · 고구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 냉장 · 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사고야자의 수	
0714.10	매니옥(카사바)	완전생산기준
0714.20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30	얌(디오스코레아종)	완전생산기준
0714.40	토란(콜로카시아종)	완전생산기준
0714.50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	완전생산기준
07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8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1.1	코코넛	
0801.11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2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것(내과피)	완전생산기준
08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1.2	브라질넛	
0801.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2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3	캐슈넛	
0801.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1	아몬드	
0802.1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2	헤즐너트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0802.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3	호도	
0802.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4	밤(카스타네아종)	
0802.4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4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5	피스타치오	
0802.5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5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6	마카다미아 너트	
0802.6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6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70	콜라 너트(콜라종)	완전생산기준
0802.80	빈랑자	완전생산기준
08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3.10	플랜틴	완전생산기준
08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10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아보카도	완전생산기준
0804.50	구아버, 망고 및 망고스틴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일(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10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0805.2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윙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완전생산기준
0805.40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50	레몬(시트러스 리몬 및 시트러스 리머눔)과 라임(시트러스 오란티 폴리아 및 시트러스 라티폴리아)	완전생산기준
08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1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7.1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	수박	완전생산기준
08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포포우(파파야)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1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08.30	배	완전생산기준
0808.40	마르멜로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09.2	버찌	
0809.21	신버찌(프루너스 체라서스)	완전생산기준
08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9.3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자두와 슬로우	완전생산기준
0810	기타 과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	완전생산기준
0810.30	흑색,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와 구즈베리	완전생산기준
0810.40	크랜베리·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일	완전생산기준
0810.50	키위프루트	완전생산기준
0810.60	두리언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810.70	감	완전생산기준
08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1.10	초본류 딸기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811.2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와 흑색 ·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81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 · 염수 ·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2.10	버찌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812.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프룬	완전생산기준
0813.3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13.40	기타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3.5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814.00	감귤류의 껍질 또는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 · 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1.1	커피(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1.2	커피(볶은 것에 한한다)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1.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90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902.10	녹차(발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2.2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2.40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3.00	마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1	후추	
0904.1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4.1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4.2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21	건조한 것(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0709.60호 또는 제0710.80호의 것은 제외한다)
0904.2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0709.60호 또는 제0710.80호의 것은 제외한다)
0905	바닐라	
0905.1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5.2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906.11	계피(신나모뎀 제이라니쿰 블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6.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906.2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07	정향[과실, 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0907.1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7.2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	육두구, 메이스 및 소두구	
0908.1	육두구	
0908.1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1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2	메이스	
0908.2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2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3	소두구	
0908.3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3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	아니스 · 대회향 · 회향 · 코리앤더 · 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 주 니퍼의 열매	
0909.2	코리앤더의 씨	
0909.2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2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3	커민의 씨	
0909.3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3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6	아니스, 대회향, 캐러웨이 또는 회향의 씨, 주니퍼의 열매	
0909.6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6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 · 월계수의 잎 · 카레 및 기타 향 신료	
0910.1	생강	
0910.1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10.1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10.20	샤프란	완전생산기준
0910.30	심황(강황)	완전생산기준
0910.9	기타 향신료	
0910.91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0910.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0	제10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001.1	듀럼종의 밀	
1001.1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1.9	기타	
1001.9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	호밀	
1002.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3	보리	
1003.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4	귀리	
1004.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10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6	쌀	
1006.10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정미(연마 또는 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쇄미	완전생산기준
1007	수수	
1007.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 · 밀리트 및 카나리시드, 기타의 곡물	
1008.10	메밀	완전생산기준
1008.2	밀리트	
1008.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8.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30	카나리시드	완전생산기준
1008.40	포니오(디지털리아종)	완전생산기준
1008.50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완전생산기준
1008.60	라이밀	완전생산기준
1008.90	기타 곡물	완전생산기준
11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2.20	옥수수가루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2.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3.1	분쇄물 및 조분	
1103.11	밀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3.13	옥수수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3.19	기타 곡물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3.20	펠리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뿔은 것(제 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4.1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1104.12	귀리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4.19	기타 곡물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4.2	기타 가공곡물(예: 껍질을 벗긴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뿔은 것에 한한다)	
1104.22	귀리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4.23	옥수수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4.29	기타 곡물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1104.30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105.10	분·조분과 분말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는 제외한다)
1105.20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는 제외한다)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 또는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1106.1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 및 제08류는 제외 한다)
1106.20	사고·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 및 제08류는 제외 한다)
1106.30	제8류 물품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 및 제08류는 제외 한다)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7.10	볶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7.20	볶은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류는 제외한다)
1108	전분, 이눌린	
1108.1	전분	
1108.11	밀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 한다)
1108.12	옥수수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 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108.13	감자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 한다)
1108.14	매니옥(카사바)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 한다)
1108.19	기타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 한다)
1108.20	이눌린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 한다)
1109.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 한다)
12	제12류 채유용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30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2.4	기타	
1202.4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1202.42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203.00	코프라	완전생산기준
1204.0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1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1207.10	팜넛과 핵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207.2	면실	
1207.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7.30	피마자	완전생산기준
1207.40	참깨씨	완전생산기준
1207.50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6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씨	완전생산기준
1207.70	멜론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9	기타	
1207.91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8.10	대두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208.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1209.10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	루우산(알팔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페스큐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로오리엄 페레네 엘)	완전생산기준
12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3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	기타	
1209.91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상의 것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루플린	
1210.10	호프(분쇄한 것, 분상의 것 또는 펠리트상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210.20	호프(분쇄한 것, 분상의 것 또는 펠리트상의 것에 한한다), 루플린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211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20	인삼	완전생산기준
1211.30	코카잎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211.40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버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212.2	해초류와 기타 조류	
1212.21	식용에 적합한 것	완전생산기준
121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9	기타	
1212.91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2	로우커스트두(캐롭)	완전생산기준
1212.93	사탕수수	완전생산기준
1212.94	치커리뿌리	완전생산기준
12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3.00	곡물의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214	스워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사료용 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4.10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21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3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발삼)	
1301.20	아라비아 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30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및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1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2.11	아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302.12	감초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302.13	호프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302.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211.20 호는 제외한다)
1302.20	펙틴질 ·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302.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1302.31	한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302.32	로우커스트두 · 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 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302.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4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 등나무 · 갈대 · 골풀 · 양버드나무 · 라피아, 청정 · 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1401.10	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401.20	등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40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4.20	면린터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40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 성의 납	
15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	라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1.20	기타의 돈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2	소 ·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502.10	탈로우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2.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3.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및 탈로우유로서 유화·혼합 또는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4.10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4.2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4.30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5.00	올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6.00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 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7.1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7.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10	조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8.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10	버어진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09.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0.00	기타 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 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한 것을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511.10	조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	조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2.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2.2	면실유와 그 분획물	
1512.21	조유(고시풀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2.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1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1513.11	조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3.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3.2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1513.21	조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3.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1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1514.11	조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4.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4.9	기타	
1514.91	조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4.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5	기타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515.1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1515.11	조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5.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5.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	조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5.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5.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6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10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6.20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7	마가린,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기타 유지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마가린(액상마가린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518.00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520.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랍·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1.10	식물성 납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52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1522.00	데그라스,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 시에 생기는 잔유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4부 조제식료품, 음료·알코올·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16류-제24류)	
16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00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1602.20	동물간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1602.3	가금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한다)	
1602.31	칠면조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1602.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1602.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1602.4	돼지의 것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내 지 제02류는 제 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 한다)
1602.50	소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 한다)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 한다)
1603.00	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 한다)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을 제외한 다)	
1604.11	연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4.12	청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4.13	정어리 · 사르디넬라 및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4.14	다랑어 · 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4.15	고등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4.16	멸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4.17	뱀장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4.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4.3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	캐비아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4.32	캐비아 대용물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10	게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2	새우류	
1605.21	밀폐용기에 넣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30	바닷가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40	기타 갑각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5	연체동물	
1605.51	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53	홍합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54	갑오징어와 오징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55	문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56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57	전복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58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5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6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61	해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62	성게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63	해파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605.6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7	제17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당류와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1701.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701.12	사탕무당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1.13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1.14	기타의 사탕수수당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1.9	기타	
1701.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1.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캐러멜	
1702.1	유당과 유당시럽	
1702.11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퍼센트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이고 5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전화당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2.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2.60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전화당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2.90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409호는 제외한다)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704.10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7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8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생 것 또는 볶은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802.00	코코아의 각 ·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3.10	탈지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803.20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804.00	코코아 버터(지 및 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805.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1806.1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806.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 · 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 · 페이스트상 · 분말상 · 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806.3	기타(블록상 · 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에 한한다)	
1806.31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1806.32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1806.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19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엑스, 분 · 분쇄물 · 조분 · 전분 또는 맥아 추출물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0401호 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901.10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4류는 제외한다)
1901.2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4류, 제 1006호 및 제 1102호부터 제 1104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 다)
190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04류, 제 1006호 및 제 1102호부터 제 1104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 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기타 물질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2.1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11	조란을 넣은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2.30	기타의 파스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2.40	쿠우스쿠우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3.00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날알상·진주상·무거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 플레이크), 날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4.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4.20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4.30	불거소맥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1006호는 제외한다)
1905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 · 실링웨이퍼 · 라이스페이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귀리빵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5.20	진저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5.3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1905.31	스위트 비스킷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5.32	와플과 웨이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5.40	러스크 · 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19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오이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2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003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4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감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4.90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2005.10	균질화한 채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5.20	감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5.40	완두(피섬 새티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5.5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2005.51	탈각한 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5.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5.60	아스파라거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5.70	올리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5.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5.9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2005.91	죽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6.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7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7.10	균질화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7.9	기타	
2007.91	감귤류의 과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7.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 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	
2008.1	견과류·낙화생 및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2008.11	낙화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20	파인애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30	감귤류 과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40	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50	살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60	버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7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80	초본류 딸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2008.91	팜 하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93	크랜베리(박시니엄 매크로카르폰·박시니엄 옥시코코스·바치니 움 비티스-이다에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97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1	오렌지주스	
2009.11	냉동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12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2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주스	
2009.21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3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주스	
2009.31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4	파인애플주스	
2009.41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50	토마토주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6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009.7	사과주스	
2009.71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	
2009.81	크랜베리(박시니엄 매크로카르폰 · 박시니엄 옥시코코스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주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	혼합주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커피 · 차 또는 마태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 · 차 ·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2101.1	커피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1.11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1.12	엑스 ·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1.20	차 또는 마태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1.30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	활성효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2.20	불활성 효모,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2.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3.10	간장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3.20	토마토 케찹과 기타 토마토의 소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3.30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3.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4.10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4.2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5.00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106.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 한다)
22	제22류 음료, 알코올 및 식초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얼음 및 눈	
2201.10	광수와 탄산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202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2202.10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 외한다)
2203.00	맥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4.10	발포성 포도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4.2	기타 포도주, 포도즙(알코올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4.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4.30	기타 포도즙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5	베르뭇과 기타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5.1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6.00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7.20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 · 리큐르 및 기타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8.30	위스키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8.4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8.50	진 및 제네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8.60	보드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9.00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 조제사료	
2301	육 · 설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지 박	
2301.10	육 또는 설육의 분 · 조분 · 펠리트, 수지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1.20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 조분 및 펠리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2	밀기울 ·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 제분 또는 기타의 처 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2.10	옥수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2.30	밀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2.40	기타 곡물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2.50	채두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 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 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303.20	비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 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3.30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4.00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5.00	낙화생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 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6.10	면실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6.20	아마인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6.30	해바라기씨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6.4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2306.41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6.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6.5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6.60	팜넛 또는 핵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7.00	포도주박, 생주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8.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30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4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401.20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2401.30	담배 부산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궤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2.10	시가·셔루트·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402.20	궤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4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403	기타 제조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담배엑스와 에센스	
2403.1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불문한다)	
2403.11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 담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403.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403.9	기타	
2403.91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403.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5부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25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및 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해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2.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3.00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4	천연흑연	
2504.10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2505.10	규사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5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6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 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 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06.10	석영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6.20	규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7.00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8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를 제외한다)·홍주석·남정석 과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물라이트, 샤모트 또는 다이ना스어드	
2508.10	벤토나이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8.30	내화점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8.40	기타 점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8.50	홍주석, 남정석 및 규선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8.60	물라이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8.70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09.00	초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분쇄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0.20	분쇄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천연탄산바륨(독중석)(하소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하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을 제외한다)	
2511.10	천연황산바륨(중정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1.20	천연탄산바륨(독중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2.00	규조토(예: 키이젤거어, 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겔보기 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2513	부석, 금강사, 천연커런덤 · 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3.10	부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3.20	금강사, 천연커런덤, 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4.00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5	대리석 · 트래버틴 · 에코신 및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앨러바스터[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5.1	대리석 및 트래버틴	
2515.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5.12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5.20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앨러바스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6	화강암 · 반암 · 현무암 · 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6.1	화강암	
2516.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6.12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6.20	사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6.90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7	자갈 · 왕자갈 · 쇄석(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 ·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 · 파편상 · 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517.10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벨러스트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7.20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 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7.30	타르매카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7.4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7.41	대리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7.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8	백운석[하소 또는 소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응결백운석	
2518.10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8.2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8.30	응결백운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9.1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1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0.10	석고, 무수석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0.20	플라스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1.00	석회석용제,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2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522.10	생석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2.20	소석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2.30	수경성 석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3	포트랜드시멘트 · 알루미나시멘트 · 슬랙시멘트 · 수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3.10	시멘트클링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3.2	포트랜드시멘트	
2523.21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3.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3.30	알루미나시멘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3.90	기타 수경성 시멘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4	석면	
2524.10	청석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운모 웨이스트	
2525.1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 운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5.20	운모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5.30	운모 웨이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6	천연동석[툽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활석	
2526.1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상도 아닌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6.20	파쇄 또는 분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8.00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529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형석	
2529.10	장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9.2	형석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퍼센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29.30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3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2530.10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30.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53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	제26류 광, 슬랙 및 회	
260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1.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제외한다)	
2601.11	응결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01.12	응결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01.20	배소한 황화철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03.00	동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07.00	연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2	우라늄광 또는 토륨광과 그 정광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2613.10	배소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5	니오븀광 · 탄탈륨광 · 바나듐광 또는 지르코늄광과 그들의 정광	
2615.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	
2616.10	은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7	기타의 광과 그 정광	
2617.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8.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19.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 · 드로스(입상의 슬랙을 제외한다) · 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20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 에 한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2620.1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	경아연 스펠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20.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620.2	주로 연을 함유하는 것	
2620.21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20.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20.3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20.60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20.9	기타	
2620.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20.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21	기타 슬랙과 회[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62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2701	석탄,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젤탄 및 이와 유사한 고형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료	
2701.1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2701.11	무연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1.12	유연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1.19	기타 석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1.20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젤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2	갈탄(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을 제외한다)	
2702.10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2.20	응결한 갈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3.00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4.00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토르트 카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5.00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를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6.00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의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7	고온 콜타르를 증류하여 얻은 기름 및 기타 물품,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707.10	벤조올(벤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20	톨루올(톨루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30	크실올(크실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40	나프탈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50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중량의 65퍼센트 이상 (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9	기타	
2707.91	크레오소트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성 타르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2708.10	피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8.20	피치코크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 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웨이트오일	
2710.1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오일을 제외한다)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제2710호로부터의 변경(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제2710호로부터의 변경(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2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퍼센트 이상이고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웨이스트오일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제2710호로부터의 변경(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9	웨이스트 오일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제2710호로부터의 변경(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2710호로부터 의 변경(화학반 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 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1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2711.1	액화한 것	
2711.11	천연가스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711.21호는 제 외한다)
2711.12	프로판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711.29호는 제 외한다)
2711.13	부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711.29호는 제 외한다)
2711.14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및 부타디엔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711.29호는 제 외한다)
2711.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711.29호는 제 외한다)
2711.2	가스상의 것	
2711.21	천연가스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711.11호는 제 외한다)
2711.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711.12호부터 제2711.21호까 지는 제외한다)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크리스털린석유왁스 · 슬랙왁스 · 오우조커라이트 · 갈탄왁스 · 토탄왁스, 기타 광물성왁스와 합성 또는 기타의 공정에 따라 얻어지는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 여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를 불문한다)	
2712.10	석유젤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2.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 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3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및 석유 또는 역청유의 기타 잔재물	
2713.1	석유코크스	
2713.11	하소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3.12	하소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3.20	석유아스팔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3.90	석유 또는 역청유의 기타 잔재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4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아 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역청질혈암·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5.00	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트·천연역청·석유아스팔트·광물성 타 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예 : 역청질매 스틱, 컷백)]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716.00	전기에너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Rule 1	규칙 1. 화학반응 원산지규정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의 상품은 제외한다)은, 그러한 화학반응이 당사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문맥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반응"규정은 상기 류에 분류된 어떠한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 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 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 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Rule 2	규칙 2. 정제 원산지규정 제28류부터 제35류까지와 제38류의 목적상, 정제는 상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정제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한한다. 가. 정제의 결과로 기존 불순물의 함량 대비 80퍼센트의 불순물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적용에 적절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및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Rule 3	규칙 3. 혼합 및 배합 원산지규정 제30류, 제31류, 제3302호, 소호 제3502.20호, 제3506호부터 제3507호까지 및 제3707호의 목적상,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는 상이하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Rule 4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원산지규정 제30류 및 제31류의 목적상, 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축소(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는 상이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단순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는 상이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Rule 5	규칙 5. 표준 물질 원산지규정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28류부터 제32류까지와 제35류 및 제38류의 목적상, 표준 물질의 생산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Rule 6	규칙 6. 이성체 분리 원산지규정 제28류부터 제32류까지와 제35류의 목적상,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Rule 7	규칙 7. 분리 금지 비원산지 물질/구성요소는 인조혼합물에서 단순히 한 개 이상의 개별적인 물질 또는 구성요소를 분리한 결과로서, 세번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규칙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분리된 물질/구성요소는 그 자체로 또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8	제28류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 및 요드	
2801.10	염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1.20	요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1.30	플루오르, 브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2.00	승화황 또는 침강황, 콜로이드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3.00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4	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2804.10	수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4.2	희가스	
2804.21	아르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4.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4.30	질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4.40	산소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804.50	붕소, 텔루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4.6	규소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퍼센트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4.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4.70	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4.80	비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4.90	셀레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5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금속 · 스칸듐과 이트륨 (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수은	
2805.1	알칼리 또는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	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5.12	칼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5.30	희토류금속 ·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5.40	수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6	염화수소(염산), 클로로황산	
2806.10	염화수소(염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6.20	클로로황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7.00	황산, 발연황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8.00	질산, 황질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2809.10	오산화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10.00	붕소의 산화물, 붕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1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1	기타 무기산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1.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1.2	기타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	이산화탄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1.22	이산화규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1.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2	비(非)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10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2.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3	비(非)금속의 황화물, 상관습상의 삼황화인	
2813.10	이황화탄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3.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2814.10	무수암모니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4.20	암모니아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 수산화칼륨(가성칼륨),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2815.1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2815.11	고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815.12호는 제 외한다)
2815.12	수용액의 것(소다액 또는 액상소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815.11호는 제 외한다)
2815.2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815.30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6	수산화마그네슘 및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6.40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7.00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삼산화크로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19.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0	산화망간	
2820.10	이산화망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0.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1	산화철 및 수산화철, 어드컬러(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2철로서 계산하여 전중량의 7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2821.10	산화철과 수산화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1.20	어드컬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2.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3.00	산화티타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4	산화연, 연단 및 오렌지연	
2824.10	일산화연(리타지, 메시코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2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5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기타 무기염기, 기타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2825.10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5.20	산화리튬 및 수산화리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5.30	산화바나듐 및 수산화바나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5.40	산화니켈 및 수산화니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5.50	산화동 및 수산화동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5.60	산화게르마늄 및 이산화지르코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5.70	산화몰리브덴 및 수산화몰리브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5.80	산화안티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 및 기 타 플루오르착염	
2826.1	플루오르화물	
2826.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6.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6.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6.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및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 및 산화요드화물	
2827.10	염화암모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7.20	염화칼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7.3	기타 염화물	
2827.31	마그네슘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27.32	알루미늄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7.35	니켈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7.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7.4	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2827.41	산화염화등과 수산화염화등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7.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7.5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	브롬화나트륨 또는 브롬화칼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7.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7.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아염소산염,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기타 하이포아염소산칼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8.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 드산염	
2829.1	염소산염	
2829.11	염소산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9.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29.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0	황화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2830.10	황화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0.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1.10	아이티온산나트륨 및 술폭실산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31.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2	아황산염, 티오황산염	
2832.10	아황산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2.20	기타 아황산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2.30	티오황산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3	황산염, 명반,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1	황산나트륨	
2833.11	황산이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3.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3.2	기타 황산염	
2833.21	마그네슘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3.22	알루미늄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3.24	니켈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3.25	동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3.27	바륨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3.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3.30	명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3.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4	아질산염, 질산염	
2834.10	아질산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4.2	질산염	
2834.21	질산칼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4.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및 인산 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5.2	인산염	
2835.22	인산일나트륨 또는 인산이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5.24	인산칼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5.26	기타 인산칼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5.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5.3	폴리인산염	
2835.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5.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 암모늄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2836.20	탄산이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6.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6.40	탄산칼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6.50	탄산칼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6.60	탄산바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6.9	기타	
2836.91	탄산리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6.92	탄산스트론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6.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7	시아화물, 산화시아화물과 시안착염	
2837.1	시아화물과 산화시아화물	
2837.11	나트륨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7.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837.20	시안착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9	규산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39.1	규산나트륨	
2839.11	메타규산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9.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39.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0	붕산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0.1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	
2840.11	무수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0.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0.20	기타 붕산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0.3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1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중크롬산나트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1.50	기타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1.6	아망간산염, 망간산염 및 과망간산염	
2841.61	과망간산칼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1.6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1.70	몰리브덴산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1.8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1.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2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아지화물을 제외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42.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 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귀금속의 아말감	
2843.10	콜로이드 귀금속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3.2	은 화합물	
2843.21	질산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3.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3.30	금 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3.90	기타 화합물, 아말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4	방사성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 또는 연료핵친원소와 동 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 물 및 잔재물	
2844.10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 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4.2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화합 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 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4.30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 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 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4.40	방사성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 또는 제2844.30호의 것을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서 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방사성 잔재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5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을 제외한다), 그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45.10	중수(산화 중수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46	희토류금속 · 이트륨 · 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2846.10	세륨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8.00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을 제 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49.10	탄화칼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9.20	탄화규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49.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850.00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드화물 · 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 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화물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52.1	무기 또는 유기 수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아말감은 제외한다)	
2852.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852.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853.00	기타 무기화합물(증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압축공기,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	제29류 유기화합품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1.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	에틸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01.23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1.24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1.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	환식탄화수소	
2902.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및 시클로테르펜	
2902.11	시클로헥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20	벤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30	톨루엔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4	크실렌	
2902.41	오르토-크실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42	메타-크실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43	파라-크실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44	혼합크실렌이성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50	스티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60	에틸벤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70	큐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2.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14	사염화탄소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903.15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22	삼염화에틸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23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3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 또는 요드화유도체	
2903.31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7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종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2903.7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7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73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74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75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7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77	기타(불소 및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8	기타 퍼할로겐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7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903.8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 화유도체	
2903.81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82	엘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8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9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91	클로로벤젠 · 오르토-디클로로벤젠 및 파라-디클로로벤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92	헥사클로로벤젠(ISO) 및 디 · 디 · 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3.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2904.10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에틸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4.20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4.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	포화 1가알코올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1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14	기타 부탄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2	불포화 1가알코올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05.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3	2가알코올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4	기타 다가알코올	
2905.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42	펜타에리트리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43	만니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44	디-글루시톨(소르비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45	글리세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5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에스클로비놀(INN)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5.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6	환식알코올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6.1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	
2906.11	멘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6.12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6.13	스테롤과 이노시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6.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6.2	방향족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06.21	벤질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6.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7	페놀, 페놀알코올	
2907.1	1가페놀	
2907.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7.12	크레졸과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7.13	옥틸페놀 · 노닐페놀과 그들의 이성체,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7.15	나프톨과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7.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7.2	다가페놀, 페놀알코올	
2907.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7.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7.23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7.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8	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8.1	할로겐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8.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8.9	기타	
2908.91	디노셉(ISO)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8.92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 및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8.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	비환식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디에틸에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9.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9.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9.30	방향족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9.4	에테르 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9.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09.60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옥시란(에틸렌 옥사이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0.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 옥사이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0.3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0.40	디엘드린(ISO, INN)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0.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1.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12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2.1	비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2.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2.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2.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2.2	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2.21	벤즈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2.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2.4	알데히드-알코올 · 알데히드-에테르 · 알데히드-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알데히드	
2912.41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2.42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2.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2.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3.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1	비환식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11	아세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1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2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케톤(기타 산소관능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3	방향족 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50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6	퀴논	
2914.61	안트라퀴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6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4.70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 물 ·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1	포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2915.11	포름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12	포름산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13	포름산의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2	초산과 그 염, 무수초산	
2915.21	초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24	무수초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3	초산에스테르	
2915.31	초산에틸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915.32	초산비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33	초산노르말부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36	초산디노셉(ISO)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50	프로피온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60	부탄산, 펜탄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70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5.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6.11	아크릴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15	올레산 · 리놀레산 · 리놀렌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16	비나파크릴(ISO)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3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6.31	벤조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34	페닐아세트산 및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6.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1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7.11	옥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12	아디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13	아젤라산 · 세바스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14	무수말레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3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33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34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35	무수프탈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37	테레프탈산디메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7.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1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8.11	락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12	타르타르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14	시트르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16	글루콘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2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8.21	살리실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23	기타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30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9	기타	
2918.91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 및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8.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19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1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0	기타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들의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그들의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파라티온(ISO) 및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0.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0.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1	비환식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1.11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2	비환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30	포화지환식아민, 불포화지환식아민,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4	방향족 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41	아닐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43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46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텍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펜터민(INN),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5	방향족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1.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에테르와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922.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13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14	텍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2	아미노나프톨 및 기타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 그들의 염	
2922.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3	아미노-알데히드 · 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염	
2922.31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4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22.42	글루탐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44	틸리딘(INN)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2.50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23.10	콜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3.20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3.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4.11	메프로바메이트(INN)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4.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4.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4.21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4.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 및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4.24	에티나메이트(INN)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4.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 및 이민관능화합물	
2925.1	이미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5.11	사카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25.12	글루테티미드(INN)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5.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5.2	이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5.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6.2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6.3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타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6.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7.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8.00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29.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0	유기-황화합물	
2930.20	티오키르바메이트와 디티오키르바메이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0.30	티우람모노설파이드 · 티우람디설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설파이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0.40	메티오닌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0.50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0.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테트라메틸납 및 테트라에틸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1.20	트리부틸틴 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93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2	산소 헤테로 원자(들)만을 가지는 산소헤테로고리	
2932.1	불지 아니한 푸란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	테트라히드로푸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2.12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2.13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2.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2.20	락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932.9	기타	
2932.91	이소사프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2.93	피페로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2.94	사프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2.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2.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	질소헤테로 원자(들)만을 가진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1	불지 아니한 피라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2	불지 아니한 이미다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33.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3	불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 지는 화합물	
2933.31	피리딘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32	피페리딘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33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 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 (INN) · 펜타닐(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 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그들 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4	퀴놀린고리 또는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 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3.41	레보파놀(INN) 및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5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진고리 구 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53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 (INN), 부토바르비탈(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 비탈(INN), 펜토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바르비 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54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55	로프라졸람(INN), 메크로과론(INN), 메타과론(INN) 및 지페프롤 (INN),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6	불지 아니한 트리아진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	멜라민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933.6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7	락탐	
2933.71	6-핵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72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79	기타 락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9	기타	
2933.91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3.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10	불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4.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4.30	페노티아진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4.9	기타	
2934.91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텍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그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4.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5.00	술폰아미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다)	
2936.2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6.21	비타민 A와 그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6.22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6.23	비타민 B2와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6.24	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6.25	비타민 B6와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6.26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6.27	비타민 C와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6.28	비타민 E와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6.29	기타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936.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 및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2937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937.1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단백질 호르몬과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	소마토트로핀과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7.12	인슐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7.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37.2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손(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7.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7.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7.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7.5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2938.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2939.1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39.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INN), 에틸모르핀, 에토르핀(INN), 헤로인, 히드로코돈(INN), 히드로모르폰(INN), 모르핀, 니코모르핀(INN), 옥시코돈(INN), 옥시모르폰(INN), 풀코딘(INN), 테바콘(INN)과 테바인, 그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2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30	카페인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4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42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43	캐친(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44	노르에페드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2939.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5	테오피린과 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 및 그들의 유도 체, 그들의 염	
2939.51	페네틸린(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6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그들의 염	
2939.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9	기타	
2939.91	코카인, 에크고닌, 레보메탐페타민, 메탐페타민(INN),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그들의 염,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39.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 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 · 당에스테르 및 그 들의 염(제2937호 · 제2938호 또는 제29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41	항생물질	
2941.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41.20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41.30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41.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41.50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4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2942.00	기타 유기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	제30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의료용품	
3001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 · 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3001.20	선 · 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2	인혈, 치료용 ·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 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 · 독소 ·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0	면역혈청 · 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2.30	백신(동물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2.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하고,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3003.1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3.20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3.3	호르몬 또는 제 2937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3.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3.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3.40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제2937호의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타 물품 또는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기준
30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004.1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20	기타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3	호르몬 또는 제2937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향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4.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 그들의 유도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40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50	비타민 또는 제2936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5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10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6	의약품용(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006.10	살균한 외과용의 캐거트,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를 포함한다] 및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뼈형성용 시멘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6.60	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6.7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 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6.9	기타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006.92	폐의료용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1	제31류 비료	
3101.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2.2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3102.21	황산암모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102.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2.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2.50	질산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2.6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2.8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혼합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103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3.10	과인산석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4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4.20	염화칼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4.30	황산칼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이 류의 물품[정상(錠狀, tablet)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 또는 용기를 포함한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105.20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 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5.5	2종의 비료요소인 질소와 인을 함유한 기타 광물성 또는 화학비 료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5.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5.60	2종의 비료요소인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1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 및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엑스,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3201.10	퀘브라초 엑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1.20	왓틀엑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1.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3202.10	합성유기유연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2.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3.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형광 증백제 또는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4.1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3204.1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4.12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를 기제 로 한 조제품, 매염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4.13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4.14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4.15	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4.16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4.17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4.19	기타(소호 제3204.11호부터 소호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3204.11호부터 제3204.17호까 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20	합성유기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합성유기물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4.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5.00	레이크안료,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6	기타 착색제,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 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루미노 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3206.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206.11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퍼센트 이상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3206.19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3206.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20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4	기타 착색제와 기타 조제품	
3206.41	군청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42	황아연을 기제로 한 리도폰·기타 안료와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5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7	조제안료 · 조제유백제 · 조제그림물감 · 법랑 · 유약 · 엔고베(슬립) ·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 또는 유리공업 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 ·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3207.10	조제안료 · 조제유백제 · 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7.20	법랑과 유약 · 엔고베(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7.30	액상라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7.40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 ·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 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8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 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 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10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208.2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8.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9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 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 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3209.1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09.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10.00	기타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 래커 및 디스토퍼를 포함한다), 피 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211.00	조제드라이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212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과 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 한다), 스탬프용의 박,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3212.10	스탬프용의 박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12.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13	화가용 · 학생용 · 간판도장공용 · 정색용 · 유희용의 회구류 및 이 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 · 튜브들이 · 병들이 · 접시들이 및 이 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한다)	
3213.10	세트상의 회구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21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214	초자용의 퍼티 · 접목용의 퍼티 · 수지시멘트 · 코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 · 실내벽 · 마루 · 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초자용의 퍼티 · 접목용의 퍼티 · 수지시멘트 · 코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14.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15	인쇄용 잉크 · 필기용 또는 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 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15.1	인쇄용 잉크	
3215.11	흑색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21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21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애플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 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 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 의 애플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플어스 솔루션	
3301.1	정유(감귤류의 것에 한한다)	
3301.12	오렌지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1.13	레몬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1.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1.2	정유(감귤류 외의 것에 한한다)	
3301.24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1.25	기타 민트류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1.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1.30	레지노이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1.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 로 한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음료제조용 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302.10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3.00	향수 및 화장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 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 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4.9	기타	
3304.91	분말상의 것(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4.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샴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5.30	헤어 래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분을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사로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한 것(덴탈 플로스)	
3306.10	치약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6.20	치간 청결용 사(덴탈 플로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54류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33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7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 · 목욕용 조제품 · 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307.10	면도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7.20	인체용 탈취제 및 내발한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7.30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3307.4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7.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30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 양초와 이사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 "치 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3401.1	비누·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3401.11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1.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1.20	기타 형상의 비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1.3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402.1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402.11	음이온성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2.12	양이온성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2.13	비이온성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3402.20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 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 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 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3403.1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3403.1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3.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3.9	기타	
3403.9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3.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4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3405	신발·가구·마루·자동차 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 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트·부직포·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 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3405.10	신발 또는 가죽용의 광택제·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5.20	목제가구·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405.30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를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5.40	조제연마페이스트 · 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5.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6.00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 · 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 말굽상, 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플라스틱(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5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3501	카세인 ·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카세인글루	
3501.10	카세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1.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3502.1	난백	
3502.11	건조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2.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2.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2.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세인글루를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4.00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5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 텍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505.10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5.20	글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6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3506.10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503호 또는 소호 제 3501.90호는 제 외한다)
3506.9	기타	
3506.91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 착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6.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7	효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3507.1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50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6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00	화약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602.00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603.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 · 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 공품	
3604.10	불꽃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6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605.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606	페로세륨 및 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하를 불문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깍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36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7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식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1.10	엑스선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2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1.2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2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1.30	기타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2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1.9	기타	
3701.91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2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2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식물제를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2.10	엑스선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3	기타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702.31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제외한다)
3702.32	기타(할로겐화는 에멀전으로 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4	기타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702.41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42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천 연색 사진용의 것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43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44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5	기타의 필름[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3702.52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53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 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54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 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55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 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56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9	기타	
3702.96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97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초과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2.98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3호 는 제외한다)
3703	사진인화지 · 판지 및 식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3.10	롤상의 것(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2호 는 제외한다)
3703.20	기타[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2호 는 제외한다)
37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3701호 또는 제3702호 는 제외한다)
3704.00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지 및 식물(노광한 것으로서 현 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705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영화용 필름 을 제외한다)	
3705.10	오프셋 복사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7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6.10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7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를 제외한다),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3707.10	감광유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707.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블록상·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	
3801.10	인조흑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1.20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1.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1.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3802.10	활성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3.00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4.00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및 기타 테르펜계 유(증류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에 한한다), 조상의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기타 조상의 파라시멘, 파인유(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에 한한다)	
3805.10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3806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런검	
3806.10	로진과 수지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6.20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 또는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 부가 물의 염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6.30	에스테르 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6.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7.00	목타르 · 목타르유 · 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 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 수지산 또는 식물성피치를 기제 로 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 절제 · 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3808.5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물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유효성분 중량의 50퍼센 트 이상이 원산 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3808.9	기타	
3808.91	살충제	6단위 세번변경 기준(유효성분 중량의 50퍼센 트 이상이 원산 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8.92	살균제	6단위 세번변경 기준(유효성분 중량의 50퍼센 트 이상이 원산 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8.93	제초제, 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6단위 세번변경 기준(유효성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중량의 최소 50 퍼센트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8.94	소독제	6단위 세번변경 기준(유효성분 중량의 최소 50 퍼센트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8.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유효성분 중량의 최소 50 퍼센트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9	완성가공제 ·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 제지공업 ·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809.10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9.9	기타	
3809.91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9.92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09.93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 · 땀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 · 땀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납붙임, 땀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1	안티녹제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3811.1	안티녹제	
3811.11	납화화물을 기제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3811.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1.2	윤활유 첨가제	
3811.21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1.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2.2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2.3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3.00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충전물, 충전된 소화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5	반응시작제 · 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	
3815.1	서포트된 촉매	
3815.11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6.00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 (제3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 품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19.00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0.0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1.00	미생물(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2.00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1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3823.11	스테아르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3.12	올레인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3.13	톨유 지방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3.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30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40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60	솔비톨(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7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다]	
3824.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78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7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8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3824.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4.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5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기타 폐기물	
3825.10	생활폐기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5.20	하수 찌꺼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5.30	임상폐기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5.4	폐 유기용제	
3825.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825.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5.5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5.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기타 폐기물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5.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826.00	바이오디젤 및 그 혼합물(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10	폴리프로필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2.20	폴리이소부틸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3.1	폴리스티렌	
3903.11	발포성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3.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3.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 품의 것에 한한다)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4.2	기타 폴리(염화비닐)	
3904.21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4.22	가소화 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4.4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4.6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4.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기타 비닐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5.1	폴리(초산비닐)	
3905.12	물에 분산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5.2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	물에 분산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5.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5.3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아니한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5.9	기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905.91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6.1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7	폴리아세탈수지 · 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7.30	에폭시수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7.50	알키드수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7.70	폴리(락트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7.9	기타 폴리에스테르	
3907.91	불포화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7.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9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9.10	요소수지, 티오요소수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9.20	멜라민수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9.30	기타 아미노수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3909.40	페놀수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09.50	폴리우레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1	석유수지 · 쿠마론-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 폴리술폰 · 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911.10	석유수지 · 쿠마론 · 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912.1	초산셀룰로오스	
3912.11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2.12	가소화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2.2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2.3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2.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 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13.10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4.00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 페어링과 스크랩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5.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봉· 스틱 및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3916.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6.2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6.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7	플라스틱의 관· 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 조인트· 엘보· 플랜지)	
3917.10	경화 단백질 또는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거트(소시지케이싱)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7.2	경질의 관· 파이프 및 호스	
3917.21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7.22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7.23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7.29	기타 플라스틱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7.3	기타 관· 파이프 및 호스	
3917.31	연질의 관· 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 상인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7.32	기타(연결구류가 없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7.33	기타(연결구류가 있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7.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7.40	연결구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8	플라스틱제의 바닥갈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 상의 것에 한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8.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9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 타 평면상의 것(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919.10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1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 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3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4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3920.43	가소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이상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5	아크릴 중합체의 것	
3920.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6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 또는 기타 폴리 에스테르의 것	
3920.61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69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7	셀룰로오스 또는 그 화학적 유도체의 것	
3920.71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920.7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79	기타 셀룰로오스유도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9	기타 플라스틱의 것	
3920.91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92	폴리아미드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93	아미노수지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94	페놀수지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0.99	기타 플라스틱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 쉬트 · 필름 · 박 및 스트립	
3921.1	셀룰라	
3921.11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1.12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1.13	폴리우레탄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1.14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1.19	기타 플라스틱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1.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2	플라스틱제의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기 · 비데 · 화장실 용 팬 · 변기용 시트와 커버 · 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 용품	
3922.10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과 세면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2.20	변기용 시트와 커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3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뚜껑 · 마개 · 캡 및 기타 마개류	
3923.1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923.2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	
3923.21	에틸렌 중합체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3.29	기타 플라스틱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3.30	카보이병 · 병 · 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3.40	스풀 · 콥 · 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3.50	뚜껑 · 마개 · 캡 및 기타 마개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5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5.10	저장기 · 탱크 ·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 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5.20	문 · 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5.30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물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의 물품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6.20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6.30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부착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6.40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392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01	천연고무 · 발라타 · 구타페르카 · 구아울 · 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일차제품이거나 판 · 스위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1.1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1.2	천연고무(기타 형상의 것에 한한다)	
4001.21	스모크드 스위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1.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1.30	발라타 · 구타페르카 · 구아울 · 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 · 판 · 스위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이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 · 판 · 스위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2.1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	라텍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3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 또는 BIIR)	
4002.31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 고무)(IIR)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4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	라텍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5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	라텍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60	이소프렌 고무(IR)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2.80	제4001호의 물품과 이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4002.9	기타	
4002.91	라텍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400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 · 판 ·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 · 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 · 판 ·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5.10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5.20	용액,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5.9	기타	
4005.91	판 · 쉬트 및 스트립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6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봉 · 관 및 형재) 및 제품 (예: 디스크 및 링)	
4006.10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07.00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8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 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4008.1	셀룰라 고무의 것	
4008.11	판·쉬트 및 스트립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8.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8.2	셀룰라 고무 외의 것	
4008.21	판·쉬트 및 스트립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8.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9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 을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009.1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되지 아니한 것	
4009.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9.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9.2	금속으로만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된 것	
4009.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9.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9.3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된 것	
4009.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9.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9.4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된 것	
4009.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09.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0	고무제의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또는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4010.1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	
4010.11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10.1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0.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0.3	전동용 벨트 또는 벨팅	
4010.31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 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0.32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 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0.33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 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0.34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 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0.35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0.36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0.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 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2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30	항공기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40	모터사이클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50	자전거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6	기타(“헤링본” 또는 이와 유사한 트레드가 있는 것에 한한다)	
4011.61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62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6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4011.9	기타	
4011.92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9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94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2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중고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 드 또는 쿠션타이어·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플랩	
4012.1	재생타이어	
4012.1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 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2.12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2.13	항공기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3	고무제의 이너튜브	
4013.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 다)과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3.20	자전거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4	위생용품 또는 의료용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황 한 고무제의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014.10	콘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5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제의 것에 한하며, 용도를 불문한다)	
4015.1	장갑, 병어리장갑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15.11	외과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6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4016.10	셀룰라 고무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6.9	기타	
4016.91	바닥 깔개와 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6.92	지우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6.93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6.94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6.95	기타 팽창성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6.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017.00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제41류-제43류)	
41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101.20	스플릿하지 아니한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습식염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1.50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1.90	기타(버트, 벤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102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지 아니하거나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102.10	탈모하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2.2	탈모한 것	
4102.21	산처리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2.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3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류의 주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103.20	파충류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3.30	돼지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3.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4.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104.11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4.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4.4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4.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4104.41호는 제 외한다)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105.1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5.3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6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 을 제외한다)	
4106.2	산양의 것	
4106.2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6.2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6.3	돼지의 것	
4106.3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6.3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6.40	파충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6.9	기타	
4106.9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6.9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 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 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4107.1	전신원피	
4107.11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7.12	그레인 스플릿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7.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7.9	기타(반신의 것을 포함한다)	
4107.91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7.92	그레인 스플릿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07.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112.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기타 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4113.10	산양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13.20	돼지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13.30	파충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1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114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4114.1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114.20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115	컴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шит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분	
4115.10	컴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шит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115.2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2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의 거트의 제품(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	
4201.00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슈트·방직용 섬유제·벨크라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 ·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 ·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 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 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2	핸드백(어깨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3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	
4202.3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3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9	기타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4203.10	의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3.2	장갑류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3.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203.30	벨트와 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3.40	기타의 의류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5.00	기타의 가죽제품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206.00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 · 방광 또는 건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 · 꼬리부분 · 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 제4102호 또는 제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4301.1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 의 유무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 · 브로드테일 · 카라쿨 · 페르시아 및 이 와 유사한 어린 양 · 인도 · 중국 · 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 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01.6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 의 유무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01.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 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01.90	머리부분 · 꼬리부분 · 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 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 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4302.1	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302.11	밍크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0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02.20	머리부분 · 꼬리부분 · 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02.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03	모피의류 ·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3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제44류-제46류)	
44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떨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1.10	떨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1.2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4401.21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1.22	활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1.3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1.31	목재 펠리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1.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2	목탄(셀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2.10	대나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3.10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 또는 기타 방부제로 처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3.20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3.4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에 한한다)	
4403.41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3.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4403.9	기타	
4403.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3.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3.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4	후프우드, 쪼갠말뚝,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 휨 가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4404.10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4.20	활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5.00	목모, 목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6	철도 또는 궤도용 침목	
4406.10	주약처리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7.10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2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 소호주 제2호의 것에 한한다)	
4407.21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22	비롤라·임부아 및 발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25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26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로메란티 및 아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27	사팰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28	이로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407.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9	기타	
4407.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93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7.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8.10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8.3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것에 한한다)	
4408.31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8.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 (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9.10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9.2	활엽수류	
4409.21	대나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09.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410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4410.1	목재의 것	
4410.11	파티클보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0.12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0.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 타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1.1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1.13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1.14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1.9	기타	
4411.92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1.93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초과 0.8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1.94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제품	
4412.10	대나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2.3	기타 합판(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шит만으로 구성된 것에 한하며, 대나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4412.31	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 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2.32	기타(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류 목재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2.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2.9	기타	
4412.94	블록보드, 라민보드 및 배튼보드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441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3.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4.00	목재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5	목재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의 케이블드럼, 목재의 페렛·박스페렛 및 기타의 깔판류, 목재의 페렛칼러	
4415.10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5.20	페렛, 박스페렛 및 기타의 깔판류, 페렛칼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6.00	목재의 통·배럴·배트·텍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7.00	목재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신발의 목제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8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셀룰라우드패널·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	창, 프랑스 창 및 그들의 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8.20	문·문틀 및 문지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8.4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거푸집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8.50	지붕이는 판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8.60	기둥 및 들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8.7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1	모자이크 마루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8.72	기타(다층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8.7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19.00	목재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20	마르퀘트리 목제품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또는 칼붙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의 목재 상자와 용기, 목재의 조상과 기타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 가구	
4420.10	목재의 조상 및 기타의 장식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2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21	기타 목제품	
4421.10	옷걸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42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5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4501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코르크의 웨이스트, 파쇄·입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4501.10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5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502.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슈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4503.10	마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5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응집코르크의 제품	
4504.10	블록·판·슈트 및 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5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601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슈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601.2	매트류 및 발(식물성 재료의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601.21	대나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01.22	등나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01.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01.9	기타	
4601.92	대나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01.93	등나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01.94	기타 식물성 재료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0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02	농세공품·지조세공물 및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수세미제품	
4602.1	식물성 재료의 것	
4602.11	대나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02.12	등나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0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6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10부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제 47류-제49류)	
47	제47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1.00	기계목재펄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2.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70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703.11	침엽수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3.19	활엽수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4703.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4703.21	침엽수류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3.29	활엽수류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70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704.11	침엽수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4.19	활엽수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4.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4704.21	침엽수류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4.29	활엽수류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5.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6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10	면린터펄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6.20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6.30	기타(대나무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6.9	기타	
4706.91	기계펄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6.92	화학펄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6.93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얻어진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7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7.1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7.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제의 것(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7.3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707.9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48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1.00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 의 것에 한한다), 천공되지 아니한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수제지와 판지	
4802.10	수제지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20	사진감광성, 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 지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40	벽지용의 원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5	기타의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802.54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55	롤상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 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56	쉬트상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 하이고,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57	기타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 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58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6	기타의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802.61	롤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62	쉬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2.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3.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또는 냅킨스톡 및 이와 유사 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 의 웹(축유한 것·압형한 것·천공한 것·표면착색한 것·표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4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4804.1	크라프트 라이너	
4804.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2	지대용 크라프트지	
4804.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3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804.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4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고 225그램 미만인 것에 한한다)	
4804.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42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5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04.5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52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4.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5	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이나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805.1	후로팅지	
4805.11	반화학 후로팅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805.12	스트로 후로팅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5.2	테스트라이너(재생라이너판)	
4805.2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5.25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5.30	아황산포장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5.40	여과지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5.50	펠트지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5.9	기타	
4805.9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5.92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5.93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6	황산지 · 내지지 · 트레이싱지 ·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광택지(롤상 또는 스위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6.10	황산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6.20	내지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6.30	트레이싱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6.40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7.0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또는 스위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8	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축유 · 압형 또는 천공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스위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4808.10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8.40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4804호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48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등사원지 또는 오프세트플레이트로 사용하는 도포지 또는 침투지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 다)	
4809.20	셀프복사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0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0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결합재가 있는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하고, 카오린(차이나 클레이)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 포한 것(기타 다른 물질로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 ·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크기와는 관 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 에 한한다]	
4810.1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의한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810.13	롤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0.14	쉬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0.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0.2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0.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0.3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을 제외한다)	
4810.31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0.32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810.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0.9	기타의 지와 판지	
4810.92	여러 겹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0.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1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브(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 에 한하며, 제4803호·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다)	
4811.10	타르·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한 지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1.4	접착지와 판지	
4811.41	셀프접착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1.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1.5	플라스틱으로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접착제를 제외 한다)	
4811.51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1.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1.6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 또는 글리세롤을 도포·침투 또 는 피복한 지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1.90	기타의 지와 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2.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3	궤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3.10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3.20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의 롤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4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4814.20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 ·착색한 것·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스틱층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지로 된 것에 한한다)	
481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제4809호의 것 을 제외한다), 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플레이트(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6.20	셀프복사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4809호는 제외한다)
481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4809호는 제외한다)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봉합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 카드, 지 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 는 것에 한한다)	
4817.10	봉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7.20	봉합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7.30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 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8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 의 웹(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 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 에 한한다), 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베드 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지제·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 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4818.10	화장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8.20	손수건·크렌싱티슈·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8.30	책상보 및 서비에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8.50	의류 및 의류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9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제의 상 자·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받 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819.1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9.2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9.30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9.40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9.50	기타의 포장용기(레코드 스리브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19.60	서류상자 · 서류받침 · 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0	지와 판지제의 장부 · 회계부 · 노트북 · 주문장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연습장 · 흡취지장 · 바인더(예: 루스리프 등) · 홀더 · 서철표지 · 각종 사무용 양식 · 삽입식 카본세트 및 기타 문구류,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책커버	
4820.10	장부 · 회계부 · 노트북 · 주문장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0.20	연습장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0.30	바인더(책표지를 제외한다) · 홀더 및 서철표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0.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0.50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1	지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1.10	인쇄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2	제지용 펄프 · 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 · 스폴 · 콕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2.1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3	기타의 지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제지용 펄프 · 지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의 기타 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품	
4823.20	여과용의 지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4805.40호는 제 외한다)
4823.4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쉬트 및 다이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3.6	지 또는 판지제의 쟁반·접시·플레이트·컵 및 이와 유사한 것	
4823.61	대나무제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3.6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3.70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823.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49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 면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1.10	단매의 것(접어포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1.9	기타	
4901.91	사전·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2.10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3.00	아동용의 그림책 또는 습화책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4.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5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5.10	지구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905.9	기타	
4905.91	책자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6.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이들을 감광지 및 카본지에 사진복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4908.1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09.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10.00	캘린더(종류를 불문하고, 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11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11.9	기타	
4911.91	서화·디자인 및 사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491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50	제50류 견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002.00	생사(꾼 것을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003.00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004.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005.00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5006.00	견사·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누에의 거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007	직물(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한다)	
5007.10	견 노일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007.20	기타 직물(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의 것을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007.90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1.1	그리지(플리스워시한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	깎은 양모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5101.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1.2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5101.21	깎은 양모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1.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1.30	탄화처리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5102.1	섬수모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2.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2.20	조수모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3	양모 ·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5103.10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3.2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3.30	조수모의 웨이스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4.00	양모 ·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5	양모 ·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하며, 코옴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카드한 양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5.2	울톱과 기타 코옴한 양모	
5105.21	코옴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5.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5.3	섬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5105.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5.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105.40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6.1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6.2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7	코옴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7.1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7.2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8.10	카드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8.20	코옴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109.10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0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10.0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5111.1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5111.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111.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111.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111.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11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112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5112.1	양모 또는 섬모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112.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11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112.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112.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11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113.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	제52류 면	
5201.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202.10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2.9	기타	
5202.91	가아넷스톡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3.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204.1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204.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4.20	소매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205.1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11	7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1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15	125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2	단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21	7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2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2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2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26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27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28	83.33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12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34	구성하는 단사가 191.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205.35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4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46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5.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2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85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206.1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11	7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1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15	125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2	단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21	7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2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2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2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25	125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다)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 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35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4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옴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 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6.45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207.10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 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08.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08.11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8.12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13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1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2	표백한 것	
5208.21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8.22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8.23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8.2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8.3	염색한 것	
5208.31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32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33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3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08.41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42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43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4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5	날염한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208.51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8.52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8.5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 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20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09.1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1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1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2	표백한 것	
5209.2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2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2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3	염색한 것	
5209.3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3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209.3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9.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09.4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9.42	데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9.43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9.4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9.5	날염한 것	
5209.5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9.5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09.5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10.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10.1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1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2	표백한 것	
5210.2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0.2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0.3	염색한 것	
5210.3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0.3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0.3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0.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10.4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0.4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0.5	날염한 것	
5210.5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0.5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21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11.1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1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1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1.20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1.3	염색한 것	
5211.3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1.3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1.3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1.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11.4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1.42	데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1.43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1.4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5	날염한 것	
5211.51	평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52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5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2	기타 면직물	
5212.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521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2.12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2.13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212.1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15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	
5212.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22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23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2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25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아마의 토크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1.10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1.2	쇄경(碎莖)·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을 제외한다)	
5301.21	쇄경 또는 타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301.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1.30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2	대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2.10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 및 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3.10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5.00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6	아마사	
5306.10	단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6.2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7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사	
5307.10	단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7.2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 지사	
5308.10	코이어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8.20	대마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309	아마직물	
5309.1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의 것	
5309.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09.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09.2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의 것	
5309.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09.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310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5310.10	표백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31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311.00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지사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1.20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의 것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1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5402.11	아라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3	텍스처드사	
5402.3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32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33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34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4	기타의 사(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에 한한다)	
5402.44	탄성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45	기타(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4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5	기타의 사(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402.5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5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5402.6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2.6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62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2.6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3	재생 또는 반합성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3.3	기타의 사(단사)	
5403.31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3.32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를 초과하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3.3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3.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3.4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3.4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3.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3.4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404.1	모노필라멘트	
5404.11	탄성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4.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4.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5.00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준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20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3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4	기타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407.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7.4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7.4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7.4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7.5	기타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5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7.5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7.5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7.5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6	기타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61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7	기타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7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에 한한다)
5407.7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7.7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7.7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7.8	기타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5407.8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8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8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8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9	기타 직물	
5407.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9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9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9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8.2	기타 직물(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8.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8.2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8.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8.2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8.3	기타 직물	
5408.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8.3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상의 공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 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408.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8.3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 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5501.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1.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2.00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	아라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3.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5503.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3.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3.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5504.1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 다)	
5505.10	합성섬유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5.2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5506.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6.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6.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6.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7.0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508.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8.2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5509.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 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5509.11	단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1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5509.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5509.21	단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2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3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5509.31	단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3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4	기타의 사(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509.41	단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4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5	기타의 사(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5509.5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5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5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6	기타의 사(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5509.6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6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9	기타의 사	
5509.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9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09.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5510.1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5510.11	단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10.1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10.20	기타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10.30	기타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10.90	기타의 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511.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11.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11.3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51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551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2.2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5512.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2.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2.9	기타	
5512.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51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513.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3.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 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3.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1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2	염색한 것	
5513.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2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513.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3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4	날염한 것	
5513.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에 한한다)
5513.4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51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514.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 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1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2	염색한 것	
5514.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 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2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3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4	날염한 것	
5514.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 또는 4올의 능직에 한하 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4.49	기타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5515.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5.1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5.2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5.2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9	기타 직물	
5515.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에 한한다)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6.1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인 것	
5516.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1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1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1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	
5516.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2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2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3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	
5516.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3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3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퍼센트 미만인 것	
5516.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4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4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4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9	기타	
5516.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9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9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516.9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6	제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5601.2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워딩과 그 제품	
5601.2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1.2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1.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1.30	섬유의 플록과 더스트 및 밀네프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2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2.10	니들룸펠트와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2.2	기타의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	
5602.2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602.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2.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3.1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603.1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603.13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603.1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603.9	기타	
5603.9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603.9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603.93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603.9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 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한다)	
5604.1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5.00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 또는 분상의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으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6.00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한 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7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또는 짚 것인지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7.2	사이잘마 또는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5607.21	포장용 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7.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7.4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것	
5607.41	포장용 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7.4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7.50	기타 합성섬유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7.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 제품으로 된 망	
5608.1	인조섬유제의 것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8.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609.00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사·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의 물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7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1.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1.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직조한 것에 한하고,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Kelem)", "슈맥(Schumacks)", "카라마니(Karamanie)"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를 포함한다)	
5702.10	"켈렘(Kelem)", "슈맥(Schumacks)", "카라마니(Karamanie)"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20	코코넛섬유(코이어)제의 바닥깔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3	기타(파일직물의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3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4	기타(파일직물의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한다)	
5702.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4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5702.50	기타(파일직물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9	기타(파일직물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한다)	
5702.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9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2.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3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 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3.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3.20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3.30	기타 인조 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3.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704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펠트제의 것에 한하 며, 터후트 또는 플룩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 를 불문한다)	
5704.10	타일(표면적이 최대 0.3제곱미터인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5602호는 제외한다)
570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5602호는 제외한다)
5705.00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 포	
5801	파일직물 및 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 은 제외한다)	
5801.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2	면제의 것	
5801.21	절단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22	절단한 코르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23	기타 위(緯)파일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26	셔닐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27	경파일 식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3	인조섬유제의 것	
5801.31	절단하지 아니한 위(緯)파일 식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32	절단한 코르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801.33	기타 위(緯)파일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801.36	셔닐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801.37	경파일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801.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802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 직물은 제외한다), 터후트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한다)	
5802.1	면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80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80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802.2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802.30	터후트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3.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4	튜올 및 기타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상·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직물은 제외한다)	
5804.10	튜올 및 기타 망직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4.2	기계제의 레이스	
5804.21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4.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4.30	수제의 레이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5.00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 및 자수의 태피스트리(예: 퍼티포인트, 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6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덱)	
5806.10	파일직물(테리타올지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을 포함한다)과 셔닐 직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6.20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6.3	기타 직물	
5806.3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6.3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6.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6.4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볼덱)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7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직조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7.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에 한 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브레이드(원단상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8.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809.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의 직물(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5810	자수천(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5810.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810.9	기타 자수포	
5810.91	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810.92	인조섬유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810.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 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59	제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 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 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버크럼 및 이와 유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	서적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겹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5902.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2.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2.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3	플라스틱으로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것은 제외한다)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3.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4	리놀륨, 방직용 섬유의 뒷면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 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904.10	리놀륨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5.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 테이프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6.9	기타	
5906.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6.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7.00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08.00	램프용, 스토티용, 라이터용, 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 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 다)	기준
5909.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의 관상의 물품(기타 재료제의 내장·보강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 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10.00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 또는 기타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 거된 것으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5911.10	침포로 사용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 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및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 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11.20	불팅클로스(제품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11.3	방직용 섬유직물 및 펠트[엔드리스 또는 연결구를 갖춘 것으로서, 제지용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것(예: 펄프 또는 석면 -시멘트용)]	
5911.31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11.32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11.40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여과포(인모제 의 것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591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0	제60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	파일 직물("롱 파일" 직물과 테리 직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 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001.10	"롱파일" 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1.2	루푸파일 식물	
6001.21	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1.22	인조섬유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1.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1.9	기타	
6001.91	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1.92	인조섬유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1.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2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을 제외한다)	
6002.4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 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0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3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으로 제6001호 또는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3.20	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3.30	합성 섬유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3.4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4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 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인 것 으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 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2	면제의 것	
6005.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2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2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2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3	합성섬유제의 것	
6005.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3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3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5.3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5.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005.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5.4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5.4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4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	기타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6006.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에 한한다)
6006.2	면제의 것	
6006.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6.2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6.2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6.2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6.3	합성섬유제의 것	
6006.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6.3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6.3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6.3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006.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42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4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44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0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 는 날염된 경우 에 한한다)
61	제61류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한다)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룩 · 아노락(스 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 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1.30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1.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룩 · 아노락(스 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 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2.2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02.30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2.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	슈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2	양상블	
6103.2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2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3	재킷과 블레이저	
6103.3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3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3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4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103.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4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4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3.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4.1	슈트	
6104.1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04.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2	양상블	
6104.2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2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3	재킷 및 블레이저	
6104.3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3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3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4	드레스	
6104.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4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4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5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5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5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5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5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6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104.6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04.6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6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4.6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에 한한다)	
6105.1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5.20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5.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 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6.1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6.20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6.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 · 브리프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 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7.1	언더팬츠와 브리프	
6107.1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7.2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7.2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7.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7.9	기타	
6107.9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8.1	슬립과 페티코트	
6108.11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2	브리프와 팬티	
6108.2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2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3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3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9	기타	
6108.9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9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9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9.1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09.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0	저지·폴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0.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6110.11	양모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0.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0.2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0.30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0.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1	유아용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1.2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1.30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1.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의 것에 한한다)	
6112.1	트랙슈트	
6112.1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2.12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2.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2.20	스키슈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2.3	남자용 또는 소년용의 수영복	
6112.31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2.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2.4	여자용 또는 소녀용의 수영복	
6112.41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2.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3.00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4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14.2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4.30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4.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5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5.2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	
6115.21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5.22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5.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5.30	기타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류(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5.9	기타	
6115.94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5.95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5.96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6.10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6.9	기타	
6116.9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6.9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6.9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6.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것)	
6117.10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7.80	기타 부속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117.90	부분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	제62류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 외한다)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 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 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1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1.1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1.13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1.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1.9	기타	
6201.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1.9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1.93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1.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 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 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1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2.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2.1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2.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6202.9	기타	
6202.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2.9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2.93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2.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은 제외한다)	
6203.1	슈트	
6203.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12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2	양상블	
6203.2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2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3	재킷 및 블레이저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3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3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4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203.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4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203.4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1	슈트	
6204.1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1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1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2	양상블	
6204.2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2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2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3	재킷 및 블레이저	
6204.3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3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3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4	드레스	
6204.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4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4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5	스커트 및 치마바지	
6204.5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5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5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6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204.6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6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63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205.2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5.30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 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6.2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6.3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6.40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물품	
6207.1	언더팬츠 및 브리프	
6207.1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7.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7.2	나이트셔츠 및 파자마	
6207.2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7.2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7.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7.9	기타	
6207.9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7.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8.1	슬립 및 페티코트	
6208.11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8.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8.2	나이트드레스 및 파자마	
6208.2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8.2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8.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8.9	기타	
6208.9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8.9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8.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9	유아용 의류 및 의류 부속품	
6209.2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6209.30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09.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0	의류(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 또는 제5907호 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6210.10	제5602호 또는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0.20	기타 의류(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01.19호까지에 열거된 종류 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0.30	기타 의류(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01.19호까지에 열거된 종류 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0.40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0.50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1	트랙슈트 · 스키슈트 및 수영복, 기타 의류	
6211.1	수영복	
6211.11	남자 또는 소년용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1.12	여자 또는 소녀용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1.20	스키슈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1.3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6211.3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1.33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1.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1.4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211.42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1.43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1.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 · 브레이스 · 서스펜더 · 가터 및 이와 유 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 물제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212.10	브래지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2.30	콜세렛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2.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3	손수건	
6213.2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4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4.20	양모제 또는 섬유모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4.30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4.4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5	넥타이류	
6215.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5.20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5.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6.00	장갑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7	기타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부속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217.90	부분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	제63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낱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6301.10	전기모포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1.20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및 여행용 러그(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1.30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및 여행용 러그(면제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1.40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및 여행용 러그(합성섬유제의 것에 한 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1.90	기타 모포 및 여행용 러그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	베드린넨 · 테이블린넨 ·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6302.10	베드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2	기타 베드린넨(날염된 것에 한한다)	
6302.2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2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3	기타 베드린넨	
6302.3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32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40	테이블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5	기타 테이블린넨	
6302.5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53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5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60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또는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의 것으로서, 면제의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9	기타	
6302.9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93	인조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 및 실내용 블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 용 밸런스	
6303.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303.12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3.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3.9	기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303.91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3.92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3.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4.1	침대덮개	
6304.1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9	기타	
6304.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92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93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5	포장용의 포대	
6305.10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鞣皮)섬유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5.20	면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5.3	인조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05.32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5.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5.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6	타포린·천막 및 차양, 텐트, 보트·세일보드 또는 랜드크래프트용 돛, 캠프용품	
6306.1	타포린·천막 및 차양	
6306.12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6.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6.2	텐트	
6306.22	합성섬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306.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6.30	돗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6.4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6.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7	기타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6307.10	마루뒹이포 · 접시뒹이포 ·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2단위 세번변경 기준(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직물로부터 마무리 공정 까지 모두 수행 된 경우에 한한 다)
6307.20	구멍재킷 및 구멍벨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7.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직물로부터 마무리 공정 까지 모두 수행 된 경우에 한한 다)
6308.00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물 및 사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309.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310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에 한한다), 끈 · 코디지 · 로프 및 케이블의 스크랩 및 끈 · 코디지 · 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	
6310.10	선별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31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제64류 - 제67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4	제64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크루잉·플러킹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1.9	기타 신발	
6401.92	발목을 덮는 것으로서 무릎을 덮지 아니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2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2.1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2.20	신발류(갑피끈을 플렉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2.9	기타 신발류	
6402.91	발목을 덮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1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 부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3.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3.4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3.5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3.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6403.9	기타 신발류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3.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4.1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 · 농구화 · 운동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 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4.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한하 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5	기타 신발류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 여 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 분품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4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5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00	펠트제의 모체(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펠트제의 플래투우 및 망송(슬릿망송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502.00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 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504.00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505.00	모자[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또는 원단상(스트립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상의 것은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기준
6506	기타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6.10	안전모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506.9	기타	
6506.91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506.99	기타 재료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507.00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6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6601.10	정원용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601.9	기타	
6601.91	대가 절첩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60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602.00	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603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6603.2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603.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7	제67류 조제우모와 새의 솜털 및 우모 또는 새의 솜털로 만들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 우모, 우모의 부분, 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702	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플라스틱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702.90	기타 재료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703.00	인모(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 가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제조한 양모나 기타의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704	가발·가수염·눈썹 및 속눈썹·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 인모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704.1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704.11	전체가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704.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704.20	인모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704.90	기타 재료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제68류 - 제70류)	
68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00	천연 석재의 포석·연석 및 판석(슬레이트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분	
6802.10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粒)·세편 및 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2.2	기타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상 또는 수평상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에 한한다)	
6802.21	대리석·트래버틴 및 엘러바스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2.23	화강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2.29	기타 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2.9	기타	
6802.91	대리석·트래버틴 및 엘러바스터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6802.92	기타 석회질 암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2.93	화강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2.99	기타 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4	밀스톤 · 그라인드스톤 · 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연마 · 버리기 · 광택 · 정형 또는 절단용의 것으로 프레임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수지석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 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 연마제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제의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6804.1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 · 그라인딩용 또는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4.2	기타 밀스톤 · 그라인드스톤 · 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	
6804.21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4.22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4.23	천연석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4.30	수지석(手砥石)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5	방직용 섬유재료 · 지 · 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를 기제로 한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특정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봉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805.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5.20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5.30	기타재료를 기제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6	슬랙울 · 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 팽창점토 ·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 · 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 6811호 또는 제 6812호 또는 제 69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슬랙울 · 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상 · 스위트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6.2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 팽창점토 ·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한 팽창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광물성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기준
68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7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	
6807.10	롤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8.00	패널·보드·타일·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 또는 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플라스터 또는 기타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9	플라스터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6809.1	보드·슈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9.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09.90	기타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810.1	타일·판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	건축용 블록 및 벽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0.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0.9	기타 제품	
6810.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0.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1	석면 시멘트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 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6811.40	석면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1.8	석면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6811.81	파형의 슈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1.82	기타 슈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6811.89	기타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이들 혼합물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 (예: 사 · 직물 · 의류 · 모자 · 신발 · 개스킷)(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6811호 또는 제681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청석면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2.9	기타	
6812.91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및 모자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2.92	지, 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2.93	압축가공한 스위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6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2.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3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스위트 · 롤 · 스트립 · 세그먼트 · 디스크 · 와셔 · 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 ·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 · 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3.8	석면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3.8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4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 ·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814.10	판 · 스위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5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 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815.10	비전기용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5.20	이탄제품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6815.9	기타 제품	
6815.91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81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69	제69류 도자제품	
6901.00	벽돌 · 블록 · 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2	내화벽돌 · 내화블록 · 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	마그네슘 · 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2.20	알루미나 ·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2.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3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 레토트 · 도가니 · 머플 · 노즐 · 플러그 · 서포트 · 큐펠 · 관 · 스위드 및 봉)(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흑연이나 기타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3.20	알루미나(Al_2O_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_2)의 혼합물 또는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3.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 · 바닥 깔개용 블록 · 서포트타일 또는 필러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6904.10	건축용 벽돌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5	기와 ·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 및 기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	기와(지붕타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5.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906.00	도자제의 관 · 도관 · 흙통 및 관의 연결구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6907.10	타일 ·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7.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6908.10	타일 ·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6908.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6909	실험실용 · 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의 통, 튜브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 · 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909.1	실험실용 · 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6909.11	자기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9.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9.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09.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 · 세면대 · 세면대용 받침 · 목욕통 · 비데 · 수세식변기통 · 수세식변기용 물통 ·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자기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6910.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1.10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11.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13	도자제의 소상 및 기타 장식용 제품	
6913.10	자기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13.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14	도자제의 기타 제품	
6914.10	자기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691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0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00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유리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2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는 제외한다), 봉 또는 관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2.10	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2.20	봉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2.3	관	
7002.31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2.32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 도당 백만분의 5이하인 기타 유리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2.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3	주입법 및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쉬트상 또는 프로파일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 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3.1	망입하지 아니한 쉬트유리	
7003.12	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기준
7003.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3.20	망입 스위트유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3.30	프로파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4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스위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4.20	유리[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4.90	기타 유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스위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5.10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5.2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7005.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5.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5.30	망입유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6.00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천공한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서, 틀을 씌운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7007.1	강화 안전유리	
7007.1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7.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7.2	접합 안전유리	
7007.2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7.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7008.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9.9	기타	
7009.91	틀을 씌우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09.92	틀을 씌운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0	유리제의 카보이 · 병 · 플라스크 · 단지 · 항아리 · 약병 · 앰플 및 기타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 다), 유리제의 보존병, 유리제의 마개 · 뚜껑 및 기타 마개류	
7010.10	앰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0.20	마개 · 뚜껑 및 기타 마개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1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및 이들 의 부분품(전구 · 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 착물이 없는 것에 한한다)	
7011.10	전등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1.20	음극선관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3	유리제품(식탁용 · 주방용 · 화장실용 · 사무용 · 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 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유리 도자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3.2	굽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	납 크리스탈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3.28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3.3	기타 음료용 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	납 크리스탈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013.37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3.4	식탁용의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 또는 주방용 유리제품(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	납 크리스탈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3.42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이하인 유리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3.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3.9	기타 유리제품	
7013.91	납 크리스탈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3.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은 제외하고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5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6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패널·플레이트·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7016.10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7	실험실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017.10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7.20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백만분의 5 이하인 기타 유리제의 것	기준
701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8	유리제의 비드 · 모조진주 · 모조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7018.10	유리제의 비드 · 모조진주 · 모조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8.20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 · 직물)	
7019.1	슬라이버 · 로빙 · 사 및 단연사	
7019.11	단연사(길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12	로빙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3	얇은 쉬트(보일) · 웹 · 매트 · 매트리스 · 보드 및 이와 유사한 부직포 제품	
7019.31	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32	얇은 쉬트(보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40	로빙직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5	기타 직물	
7019.51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52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01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020.00	유리제의 기타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 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71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 부를 불문하고, 실로 펜 것 · 장착 또는 세트로된 것은 제외하며,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	
7101.10	천연진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1.2	양식진주	
7101.21	가공하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1.22	가공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로된 것 은 제외한다)	
7102.10	선별하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2.2	산업용의 것	
7102.2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2.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2.3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2.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 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로 펜 것 · 장착 또는 세트 로된 것은 제외한다),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	
7103.1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3.9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루비 · 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3.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7104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로 켜 것, 장착 또는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 것)	
7104.10	압전기용 석영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4.20	기타(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5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7105.10	다이아몬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6	은(금 또는 백금으로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반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7106.10	분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6.9	기타	
7106.91	가공하지 아니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6.92	반제품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7.00	은을 입힌 비(卑)금속(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8	금(백금으로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반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7108.1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	분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8.13	기타 반제품 형상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8.20	화폐용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09.00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반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110.1	플라티늄	
7110.1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0.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0.2	팔라듐	
7110.2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0.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0.3	로듐	
7110.3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0.3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0.4	이리듐·오스뮴 및 루테튬	
7110.4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0.4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1.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 은 또는 금(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7112.3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2.9	기타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3.1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113.11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3.19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 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4.1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다)	
7114.11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 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4.19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4.2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7115.10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스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의 제품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7117.1	비(卑)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7.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8	주화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하며, 법정통화가 아닌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11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15부 비금속 및 비금속 제품들(제72류 - 제83류)	
72	제72류 철강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 한다)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다)	기준
7201.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1.5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	페로얼로이	
7202.1	페로망간	
7202.1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2	페로실리콘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30	페로실리코망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4	페로크로뮴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60	페로니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70	페로몰리브데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8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2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9	기타	
7202.91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92	페로바나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93	페로니오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 (럼프·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순도가 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저 전중량의 99.94퍼센트인 철(럼프·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4.2	합금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4.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4.4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41	선삭·세이빙·칩·밀링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 및 스템 핑(변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4.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5	입과 분(선철, 스피그라이즌, 철강의 것에 한한다)	
7205.10	입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5.2	분	
7205.21	합금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5.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 한다)	
7206.10	잉곳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퍼센트 미만인 것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6호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07.12	기타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6호는 제외한다)
7207.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6호는 제외한다)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퍼센트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6호는 제외한다)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2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산세(酸洗)한 것에 한한다]	
7208.25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26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27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3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08.36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37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38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39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4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5	기타(코일상이 아닌 것으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08.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5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5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08.5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1	코일상의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 하지 아니한 것	
7209.1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11호 는 제외한다)
7209.1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11호 는 제외한다)
7209.1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11호 는 제외한다)
7209.1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11호 는 제외한다)
7209.2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09.2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11호 는 제외한다)
7209.2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11호 는 제외한다)
7209.2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11호 는 제외한다)
7209.2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11호 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0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11호 는 제외한다)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0.1	주석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11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외한다)
7210.12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외한다)
7210.20	납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외한다)
7210.30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외한다)
7210.4	기타의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41	파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외한다)
7210.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외한다)
7210.50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외한다)
7210.6	알루미늄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외한다)
7210.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외한다)
7210.7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외한다)
721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제7209호 또는 제7211호는 제 외한다)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1.13	4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 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하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09호 는 제외한다)
7211.14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09호 는 제외한다)
7211.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09호 는 제외한다)
7211.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1.23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퍼센트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09호 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11.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09호 는 제외한다)
721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 또는 제7209호 는 제외한다)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 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2.10	주석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부 터 제7211호까 지는 제외한다)
7212.20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부 터 제7211호까 지는 제외한다)
7212.30	기타의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부 터 제7211호까 지는 제외한다)
7212.4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부 터 제7211호까 지는 제외한다)
7212.50	기타의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부 터 제7211호까 지는 제외한다)
7212.60	클래드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08호부 터 제7211호까 지는 제외한다)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3.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변 형을 포함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3.20	기타(괘삭강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3.9	기타	
7213.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7213.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단조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는 제외한다)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하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는 제외한다)
7214.30	기타(괘삭강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는 제외한다)
7214.9	기타	
7214.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는 제외한다)
7214.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는 제외한다)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5.10	괘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 또는 제7214호 는 제외한다)
7215.50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 또는 제7214호 는 제외한다)
721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 또는 제7214호 는 제외한다)
72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7216.10	유·아이 또는 에이치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6.2	엘 또는 티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16.21	엘형강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7216.22	티형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6.3	유·아이 또는 에이치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 다)	
7216.31	유형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6.32	아이형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6.33	에이치형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6.40	엘 또는 티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6.50	기타 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6.6	형강(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6.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6.9	기타	
7216.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6.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7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선	
7217.10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부 터 제7215호까 지는 제외한다)
7217.2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부 터 제7215호까 지는 제외한다)
7217.30	기타 비(卑)금속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부 터 제7215호까 지는 제외한다)
721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3호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터 제7215호까 지는 제외한다)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8.9	기타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8.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19.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9.1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1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1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1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2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코일상의 것은 제외한다)	
7219.2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2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2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2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3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9.3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32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33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34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19.35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19.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0.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20.1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0.12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0.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0.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2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7222.1	봉(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2.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2.20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2.30	기타 봉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2.40	형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5.1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방향성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7225.30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5.40	기타(코일상의 것은 제외하며,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5.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5.9	기타	
7225.91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5.92	기타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6.1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방향성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6.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6.20	고속도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6.9	기타	
7226.9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6.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6.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7.10	고속도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8.10	고속도강의 봉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8.30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8.4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8.50	기타의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8.60	기타의 봉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8.70	형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8.80	중공드릴봉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7229.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22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철강제의 용접된 형강	
7301.10	강시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1.20	형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책궤조와 치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목(크로스타이)·계목판·좌철·좌철빼기·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립·노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2.10	궤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2.30	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2.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3.00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304	철강제(주철제는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7304.1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4.11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2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튜브와 드릴파이프	
7304.22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23	기타 드릴파이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24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3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31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4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41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5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51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예: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5.1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5.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30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5.2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5.3	기타(용접한 것에 한한다)	
7305.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5.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6.1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6.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6.2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과 튜빙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6.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6.3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6.4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6.5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6.6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에 한한다)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6.69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7307.1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비가단주철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1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2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7.21	플랜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 · 벤드와 슬리브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23	바트용접한 연결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2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9	기타	
7307.91	플랜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 · 벤드와 슬리브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93	바트용접한 연결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탐·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봉·형강·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8.10	다리와 교량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8.20	탐과 격자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8.30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8.40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갱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09.00	각종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계장치 또는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0	각종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기계장치 또는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10.1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310.2	용적이 50리터 미만인 것	
7310.21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0.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1.00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2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연선·로프 및 케이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3.00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 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4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 철강제의 익스팬디드 메탈	
7314.1	직조한 클로드	
7314.12	기계류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4.14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4.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4.2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 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 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4.3	기타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에 한한다)	
7314.31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4.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4.4	기타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	
7314.41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4.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4.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4.50	익스팬디드메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315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과 그 부분품	
7315.11	롤러체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소호 제7315.19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7315.12	기타체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소호 제7315.19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7315.19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5.20	스키드체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소호 제7315.90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7315.8	기타체인	
7315.81	스터드링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소호 제7315.90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소호 제7315.90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5.8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소호 제7315.90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5.90	기타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6.00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7.00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재료제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두부가 동인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혹·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코치스크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12	기타 목재 스크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13	스크루혹과 스크루링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14	셀프타핑 스크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15	기타 스크루 및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16	너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2	나선가공하지 아니한 제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318.21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22	기타 와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23	리벳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24	코터와 코터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8.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9	철강제의 수봉침 · 수편침 · 돛바늘 · 코바늘 · 자수용 천공수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제의 안전핀과 기타의 핀(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19.40	안전핀과 기타 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1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스프링과 그 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320.20	나선용 스프링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32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321	철강제의 스토브 · 레인지 · 화상 · 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베큐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1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321.12	액체연료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1.19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1.8	기타 기구	
7321.8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1.82	액체연료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1.89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1.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322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7322.1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	주철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32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32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323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7323.1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3.9	기타	
7323.91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3.92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3.93	스테인리스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3.9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3.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4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324.2	목욕통	
7324.21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324.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324.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5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7325.10	비가단주철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5.9	기타	
7325.91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732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7326.1	단조 또는 압착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26.11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6.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6.20	철강선제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32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	제74류 동과 그 제품	
7401.00	동의 매트, 시멘트동(침전동)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2.00	정제하지 아니한 동,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3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403.1	정제한 동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3.12	와이어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3.13	빌레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3.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3.2	동합금	
7403.21	동-아연의 합금(황동)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3.22	동-주석의 합금(청동)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3.29	기타 동합금(제7405호의 마스터알로이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4.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5.00	동의 마스터알로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6	동의 분과 플레이크	
7406.10	비충상조직의 분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7406.20	충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7	동의 봉과 프로파일	
7407.10	정제한 동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7.2	동합금의 것	
7407.21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7.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8	동의 선	
7408.1	정제한 동의 것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07호는 제외한다)
7408.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07호는 제외한다)
7408.2	동합금의 것	
7408.21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07호는 제외한다)
7408.22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07호는 제외한다)
7408.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07호는 제외한다)
7409	동의 판·шит 및 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409.1	정제한 동의 것	
7409.11	코일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9.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9.2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7409.21	코일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9.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9.3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409.31	코일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9.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9.4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09.90	기타 동 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410.1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	
7410.11	정제한 동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09호는 제외한다)
7410.12	동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09호는 제외한다)
7410.2	뒷면을 붙인 것	
7410.21	정제한 동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09호는 제외한다)
7410.22	동 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09호는 제외한다)
7411	동제의 관	
7411.10	정제한 동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1.2	동 합금의 것	
7411.21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1.22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1.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2	동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7412.10	정제한 동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11호는 제외한다)
7412.20	동 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411호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413.00	동제의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5	못 ·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동제 또는 동제의 두부를 가지는 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동제의 스크루 · 볼트 · 너트 · 스크루혹 · 리벳 · 코터 · 코터핀 ·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못과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5.2	나선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 물품	
7415.21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5.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5.3	기타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스크루, 볼트와 너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5.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8	동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동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동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0	식탁용품 · 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8.20	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9	동제의 기타 제품	
7419.10	체인과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9.9	기타	
7419.91	주조 · 주형 ·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419.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5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 ·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7501.10	니켈의 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1.20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2	니켈의 괴	
7502.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7502.20	니켈 합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4.00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 및 선	
7505.1	봉과 프로파일	
7505.1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5.12	니켈 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5.2	선	
7505.2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5.22	니켈 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6	니켈의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7506.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506.20	니켈 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507	니켈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7507.1	관	
7507.1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7.12	니켈 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7.20	관연결구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508	니켈제의 기타 제품	
7508.10	니켈선제의 클로드 · 그릴 및 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5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	
7601.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1.20	알루미늄 합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7603.10	비층상조직의 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3.20	층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4.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4.2	알루미늄 합금의 것	
7604.21	중공프로파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4.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5	알루미늄의 선	
7605.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7605.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604호는 제외한다)
760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604호는 제외한다)
7605.2	알루미늄 합금의 것	
7605.2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604호는 제외한다)
7605.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604호는 제외한다)
7606	알루미늄의 판·шит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606.1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606.1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6.12	알루미늄 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6.9	기타	
7606.9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6.92	알루미늄 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 (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607.1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7.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7.20	뒷면을 붙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8	알루미늄제의 관	
7608.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8.20	알루미늄 합금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09.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608호는 제외한다)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붕·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0.10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1.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2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3.00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604호 또는 제7605호 는 제외한다)
7615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5.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6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7616.10	못·압정·스테인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혹·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6.9	기타	
7616.91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616.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78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7801	연의괴	
7801.10	정제한 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801.9	기타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80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802.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804	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분과 플레이크	
7804.1	판·쉬트·스트립 및 박	
7804.11	쉬트·스트립 및 박[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804.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804.20	분과 플레이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806.00	연제의 기타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79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	
7901.1	합금하지 아니한 아연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퍼센트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퍼센트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901.20	아연 합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903	아연의 더스트·분과 플레이크	
7903.10	아연더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9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904.00	아연의 봉·프로파일 및 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905.00	아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7907.00	아연제의 기타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0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	
8001.10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001.20	주석 합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003.00	주석의 봉 · 프로파일 및 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007.00	주석제의 기타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1	제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1.10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1.9	기타	
8101.94	텅스텐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1.96	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1.97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1.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2	몰리브데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2.10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2.9	기타	
8102.94	몰리브데넘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2.95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 ·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2.96	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102.97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2.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3.20	탄탈륨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3.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3.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4.1	마그네슘의 괴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8퍼센트 이상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4.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4.20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4.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연삭설 및 입,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4.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5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5.20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5.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5.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6.00	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7.20	카드뮴의 괴,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7.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107.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8.20	티타늄의 과,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8.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8.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9.20	지르코늄의 과,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9.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09.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0.10	안티모니의 과,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0.20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0.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112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 (컬럼븀) · 레늄 및 탈륨과 이들 금속의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2.1	베릴륨	
8112.12	과,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2.13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2.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2.2	크로뮴	
8112.21	과,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112.22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2.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2.5	탈륨	
8112.51	괴,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2.52	웨이스트와 스크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2.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2.9	기타	
8112.92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2.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113.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혹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의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썰기 및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공구	
8201.10	가래 및 삽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1.30	곡괭이·픽스·괭이와 쇠스랑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1.40	도끼·빌혹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1.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1.60	울타리전단기·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1.90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수도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2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202.10	수동식 톱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2.20	띠톱의 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2.3	원형톱날(슬리팅 또는 슬로팅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2.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2.40	체인톱의 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2.9	기타의 톱날	
8202.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2.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3	줄 ·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 · 금속절단용 가위 · 파이프커터 · 볼트크로퍼 · 천공편치 및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3.2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3.30	금속 절단용의 가위 및 이와 유사한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3.40	파이프 커터 · 볼트 크로퍼 · 천공편치 및 이와 유사한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4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204.1	수동식의 스패너와 렌치	
8204.11	조정할 수 없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4.12	조정할 수 있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4.2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5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 · 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모루, 가반식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8205.10	드릴링 · 드레딩 또는 태핑용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5.20	해머와 슬레즈해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5.30	목재가공용의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5.40	스크루드라이버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5.5	기타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	가정용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5.5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5.60	블로램프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5.70	바이스 · 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8205.90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6.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 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 · 스탬핑 · 펀칭 · 태핑 · 드레딩 · 드릴링 · 보링 · 브로칭 · 밀링 · 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7.1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8207.13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7.20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7.30	프레싱 · 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7.40	태핑 또는 드레딩용의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07.50	드릴링용의 공구(착암기용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60	보링 또는 브로칭용의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70	밀링용의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80	터닝용의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90	기타 호환성 공구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금속 가공용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8.20	목재 가공용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8.30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8.40	농업·원예 또는 임업 기계용의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8.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09.00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2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11	칼(톱니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에 한 하며, 전정용 칼을 포함하고,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이들 의 날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1.9	기타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11.92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11.94	칼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1.95	비(卑)금속제의 손잡이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8212.10	면도기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212.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2.90	기타 부분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3.00	가위 · 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4	기타 칼붙이 제품(예: 조발기 · 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 · 초퍼 및 민싱용 칼 · 종이용 칼),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종이용 칼 · 편지개봉기 · 지우개용 칼 · 연필깎이와 그 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4.20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5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키머 · 케이크서버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8215.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하나의 물품은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5.20	위 물품이 조합된 기타의 세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5.9	기타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215.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83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8301	비(卑)금속제의 자물쇠(열쇠 · 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제의 열쇠	
8301.10	자물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301.2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301.30	가구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301.40	기타의 자물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301.50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301.60	부분품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301.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302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302.10	경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2.20	카스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2.30	자동차용에 적합한 기타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2.4	기타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2.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2.50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3.00	비(卑)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 용의 문과 저장실·현금 또는 문서용 상자 및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4.00	비(卑)금속제의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페이퍼 레스트·펜트레이·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 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 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5	비(卑)금속제의 루스-리프식 바인더 또는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레터코너·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 및 이와 유사한 사무 용품,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예: 사무실용·가구류 용·포장용의 것에 한한다)	
8305.10	루스-리프식 바인더 또는 서류철용 피팅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305.2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306	비(卑)금속제의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의 것은 제외한다), 비(卑)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 비(卑)금속제의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비(卑)금속제의 거울	
8306.10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6.2	소상과 기타 장식품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6.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6.30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7	비(卑)금속제의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307.10	철강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7.90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8	비(卑)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혹·아이·아이릿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관리벳 또는 이고(二股)리벳, 비(卑)금속제의 구슬과 스팅글	
8308.10	혹·아이 및 아이릿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8.20	관리벳 또는 이고리벳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8.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9	비(卑)금속제의 전(栓)·캡과 뚜껑(크라운코르크·스크루캡 및 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병용의 캡슐·나선형의 마개·마개용 커버·실 및 기타 포장용 부속품	
8309.10	크라운코르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0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10.0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 명판, 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 숫자, 문자 및 기타 표지판(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11	비(卑)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봉·관·판·용접봉 및 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와 유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렉스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분을 응결하여 제조한 금속스프레이용의 선 및 봉	
8311.10	비(卑)금속제의 용접봉(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11.20	비(卑)금속제의 선(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11.30	비(卑)금속제의 도포된 봉과 심이 충전된 선(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31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4류 및 제85류)	
84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계류와 기기	
8401.10	원자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401.2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계류와 기기 및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401.3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과열수보일러	
8402.1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02.12호는 제 외한다)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02.11호는 제 외한다)
8402.19	기타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402.20	과열수보일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02.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3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보일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403.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4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착기기(예: 연료절약기 · 과열기 · 그을음제거기 · 가스회수기), 스팀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 용의 응축기	
8404.10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착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404.20	스팀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404.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5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405.10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405.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6	증기터빈	
8406.10	선박추진용 터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8406.8	기타 터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06.81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06.82호는 제 외한다)
8406.82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06.81호는 제 외한다)
8406.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407.10	항공기용 엔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7.2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아웃보드 모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7.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7.3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왕복 피스톤식 엔진	
8407.31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7.32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7.90	기타 엔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8.20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8.90	기타 엔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09	부분품(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409.10	항공기 엔진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9.9	기타	
8409.91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09.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0.1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10.12호 또는 제8410.13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0.12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10.11호 또는 제8410.13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0.13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소호 제 8410.11호 또는 제8410.12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러와 기타 가스터빈	
8411.1	터보제트	
8411.11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11.12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11.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2	터보프로펠러	
8411.21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11.22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22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소호 제 8411.21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8	기타의 가스터빈	
8411.81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11.82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82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11.81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9	부분품	
8411.91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	기타의 엔진과 모터	
8412.10	반동 엔진(터보제트는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2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3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8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액체엘리베이터	
8413.1	펌프(계기를 갖춘 것 또는 갖추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13.11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3.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 또는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3.40	콘크리트 펌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3.50	기타 용적형 왕복펌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3.60	기타 용적형 회전펌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13.70	기타 원심펌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3.8	기타 펌프,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펌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3.9	부분품	
8413.91	펌프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3.92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또는 기타 가스압축기와 팬, 팬이 결 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 한다)	
8414.10	진공펌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4.20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의 압축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4.40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프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4.5	팬	
8414.51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4.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4.6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4.8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14.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창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5.20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5.8	기타	
8415.81	냉각 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5.82	기타(냉각 유닛을 결합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5.83	냉각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5.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6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액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6.20	기타 노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6.30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6.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배소·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 노와 오븐(광석·황철광 또는 금속 처리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	냉장고·냉동고 및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2	가정형의 냉장고	
8418.21	압축식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8.50	냉장 또는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목적의 기타 가구(체스트, 캐비닛, 전시용카운터, 쇼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8.6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 열펌프	
8418.61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8.6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8.9	부분품	
8418.91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가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8.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 또는 냉각과 같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의 여부를 불문하며(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는 제외한다),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저장식 물가열기	
8419.1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8419.11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20	내과용 · 외과용 또는 실험실용의 살균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3	건조기	
8419.31	농산물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32	목재 · 제지용 펄프 · 지 또는 판지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40	증류기 또는 정류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50	열교환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8	기타 기기	
8419.81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8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19.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0	캘린더기 또는 기타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캘린더기 또는 기타 로울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20.9	부분품	
8420.91	실린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0.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8421.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	크림분리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12	의류탈수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2	액체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3	기체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9	부분품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22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류, 병 · 깡통 · 상자 · 자루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합,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류, 병 · 단지 ·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 용 기계류, 기타 포장기계류(열수축 포장기계류를 포함한다), 음료 용 탄산가스주입기	
8422.1	접시세척기	
8422.11	가정형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2.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2.2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2.30	병 · 깡통 · 상자 · 자루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합, 실 또는 레 이블 첨부용의 기계류, 병 · 단지 ·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 슐취부용 기계류,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2.40	기타 포장기계류(열수축 포장기계류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2.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 또는 검사기를 포함한다), 각종의 저울추	
8423.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의 저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3.20	컨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3.8	기타 중량측정기기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3.82	최대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3.8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3.90	각종의 저울 추, 저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20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3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8	기타 기기	
8424.81	농업용 또는 원예용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8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5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원치와 캡스턴, 잭	
8425.1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 또는 차량을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8425.11	전동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5.3	원치, 캡스턴	
8425.31	전동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5.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5.4	잭, 차량을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	
8425.41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5.42	기타의 잭과 호이스트(액압식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6.1	천장주행 크레인 · 트랜스포터 크레인 · 갠트리 크레인 · 교각형 크레인 ·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8426.11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20	타워크레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3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26.4	기타 기계류(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8426.41	타이어가 달린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6.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6.9	기타 기계류	
8426.91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6.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7	포크리프트트럭, 기타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 된 것에 한한다)	
8427.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7.20	기타 자주식 트럭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7.90	기타 트럭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8	기타 권양용 · 하역용 ·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 · 에스컬레이터 · 컨베이어 · 텔레페릭)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8.20	뉴매틱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8.3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8.32	기타 버켓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8.33	기타 벨트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8.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텔레페릭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 퓨니쿨러용의 견인 장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90	기타 기계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의 불도저 · 앵글도저 · 그레이더 · 레벨러 · 스크레이퍼 · 메커니컬 셔블 · 굴착기 · 셔블로더 ·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29.1	불도저와 앵글도저	
8429.11	무한 궤도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그레이더와 레벨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30	스크레이퍼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9.40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9.5	메커니컬 셔블, 굴착기와 셔블로더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29.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0	기타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향 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8430.10	향타기와 항발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0.2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3	석탄 또는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류	
8430.31	자주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4	기타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류	
8430.41	자주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기타 기계류(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6	기타 기계류(자주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8430.61	탐핑용 또는 콤팩팅용의 기계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30.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는 부분품	
8431.10	제8425호의 기계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1.20	제8427호의 기계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1.3	제8428호의 기계류의 것	
8431.31	리프트, 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1.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1.4	제8426호 · 제8429호 또는 제8430호의 기계류의 것	
8431.41	버킷 · 셔블 · 그랩과 그립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1.42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소호 제8430.41호 또는 제8430.49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류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류(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8432.10	플라우(쟁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2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8432.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30	파종기·식부기와 이식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40	퇴비살포기와 비료살포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80	기타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류는 제외한다)	
8433.1	공원 또는 운동장의 잔디깎는 기계	
8433.11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20	기타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33.30	기타 건조제조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3.40	짚 또는 건조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3.5	기타 수확기, 탈곡기	
8433.51	수확-탈곡 겸용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3.52	기타 탈곡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3.53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3.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3.60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33.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류	
8434.10	착유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4.20	낙농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4.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5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류	
8435.10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5.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6	기타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류(기계 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가금의 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란기와 양육기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6.2	가금의 사육용 기계,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6.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6.80	기타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6.9	부분품	
8436.91	가금 사육용 기계류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6.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 업용 기계류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류(농장형 의 것은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37.1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7.80	기타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7.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류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류는 제외한다)	
8438.10	베이커리기계류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제 조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8.2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8.30	설탕 제조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8.40	양조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50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6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80	기타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류 또는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류	
8439.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9.20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9.30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9.9	부분품	
8439.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39.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0	제본용 기계류(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0.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1	기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류(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절단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1.20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30	카톤 · 박스 · 케이스 · 튜브 ·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40	제지용 펄프 · 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80	기타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2	플레이트 · 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기계류 · 장치 및 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 ·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 · 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기계류 · 장치 및 장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2.40	상기한 기계류 · 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2.50	플레이트 ·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 공(예: 평삭 · 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인쇄기 · 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1	제8442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오프셋 인쇄기계류(릴식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2	오프셋 인쇄기계류(슈이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아니한 상태의 슈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3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4	활판인쇄용 기계류(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5	활판인쇄용 기계류(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43.16	곡면인쇄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3.17	그라비아인쇄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3.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3.3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 한다)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3.32	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한 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3.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3.9	부분품 및 부속품	
8443.91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 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4.00	인조섬유제의 방사·연신·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 또는 연사기와 기타 방직사 제조 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 준비용 기계	
8445.1	방적준비기계	
8445.11	카드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12	코밍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13	연조기 또는 조방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20	방적기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30	합사기 또는 연사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40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6	직기(직조기)	
8446.1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 직조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6.2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물 직조용(셔틀형의 것에 한한다)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6.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6.30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물 직조용(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7	편직기 · 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 · 튜울 · 레이스 · 자수포 · 트리밍 · 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8447.1	원형편기	
8447.11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7.12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7.20	횡편기, 스티치 본딩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류(예: 도비기 · 자카드기 · 자동정지기 · 셔틀교환기), 이 호 또는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피들 · 스피들플라이어 · 침포 · 코움 · 방사니플 · 셔틀 · 종광 · 종광프레임 · 메리야스용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바늘)	
8448.1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류	
8448.11	도비기와 자카드기, 이들과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 · 복사 · 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20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3	제8445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	침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33	스핀들 · 스핀들플라이어 · 스피닝링 및 링트래블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8.4	직기(직조기)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42	직조기용의 바디 · 종광과 종광 프레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8.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8.5	제8447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 · 바늘과 기타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8.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49.00	펠트 또는 부직포(원단상 또는 성형의 것)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 용 기계류(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류를 포함한다), 모자제조용 형 (型)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0.1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 인 것	
8450.11	완전자동식 기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12	기타 기계(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20	기계(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	세탁용 · 클리닝용 · 쥐어짜기용 · 건조용 · 다림질용 · 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 표백용 · 염색용 · 드레싱용 · 완성가공용 · 도포용 또는 침지용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직사 · 직물류 또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권취기 · 재권취기 · 접음기 · 절단기 또는 핑킹기(방직용 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8451.10	드라이클리닝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2	건조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1.21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40	세척기 · 표백기 또는 염색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50	권취기 · 재권취기 · 접음기 · 절단기 또는 핑킹기(방직용 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80	기타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2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가구·밀판·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가정형의 재봉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52.21호 또는 제8452.29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2.2	기타 재봉기	
8452.21	자동식의 유닛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52.10호 또는 제8452.29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2.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52.10호 또는 제8452.21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2.30	재봉기용 바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2.90	재봉기용의 가구·밀판과 덮개 및 그 부분품,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준비기·유피기 또는 가공기계류 또는 원피나 가죽으로 만든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나 수선용 기계류(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	원피나 가죽의 유피준비기·유피기 또는 가공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3.20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3.80	기타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3.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454.10	전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20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30	주조기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4.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	관 압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5.2	기타 압연기	
8455.21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5.22	냉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5.30	압연기용의 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5.90	기타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56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 초음파 · 방전 · 전기화학 · 전자빔 · 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워터제트 절단기	
8456.1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6.20	초음파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6.30	방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8457.10	머시닝센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7.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7.30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8.1	수평 선반	
8458.1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8.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8.9	기타 선반	
8458.9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8.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한 다)로서 드릴링·보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 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9.2	기타 드릴링 머신	
8459.2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9.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9.3	기타 보링밀링머신	
8459.3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9.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9.40	기타 보링머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9.5	무릎형 밀링머신	
8459.5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59.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6	기타 밀링머신	
8459.6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70	기타 드레딩 또는 태핑머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	디버링 · 샤프닝 · 그라인딩 · 호닝 · 래핑 ·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 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8460.1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8460.1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2	기타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60.2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0.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0.3	샤프닝머신(공구 또는 커터를 연삭하는 것에 한한다)	
8460.3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0.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0.40	호닝머신 또는 래핑머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용·기어절삭용·기어연 삭용 또는 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 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61.20	쉐이핑머신 또는 슬로팅머신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1.30	부로칭머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1.40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1.50	톱기계 또는 절단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2	단조 · 해머링 또는 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 한다), 굽힘 · 접음 · 교정 · 펼침 · 전단 · 편칭 또는 닛칭용의 금속 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그 외의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 공용의 프레스	
8462.10	단조기 또는 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2.2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3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3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4	편칭기 또는 낫칭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	수치제어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9	기타	
8462.91	유압식 프레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3	기타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8463.10	드로우 벤치(봉·관·프로파일·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나사전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3.30	선가공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4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 또는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8464.10	톱기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64.20	연마기 또는 광택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5	목재 · 코르크 · 뼈 · 경질고무 ·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 · 스테이플용 · 접착용 또는 기타 조립 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	다 작업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5.9	기타	
8465.91	톱 기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5.92	평삭기 · 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 방식으로 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5.93	연삭기 · 샌딩기 또는 광택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5.94	굽힘기 또는 조립기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5.95	드릴링 또는 모티싱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5.96	스플리팅 · 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6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가공물홀더 또는 톨홀더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 분할대와 기타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각종의 수 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톨홀더	
8466.10	톨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6.20	가공용 홀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6.30	분할대와 기타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9	기타	
8466.91	제8464호의 기계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92	제8465호의 기계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93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제8462호 또는 제8463호에 해당하는 기계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8467.1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67.2	전동기를 자장한 것	
8467.21	각종의 드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7.22	톱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7.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7.8	기타 공구	
8467.81	체인톱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7.8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7.9	부분품	
8467.91	체인톱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67.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능 여부를 불문하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면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8468.10	수지식 취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9.00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데이터 녹음·재생 및 표시기,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이와 유사한 기계 (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없이 작동되는 것에 한한다)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데이터 녹음, 재생 및 표시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0.2	기타 전자계산기	
8470.21	인쇄 장치를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0.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0.30	기타 계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0.50	금전 등록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4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49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 또는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70	기억장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8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2	기타 사무용 기계(예: 헤кто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 또는 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 또는 스테이플기)	
8472.10	등사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2.30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와 우편물의 개봉·봉합 또는 실링기 및 우표의 첨부 또는 소인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2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40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50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 또는 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 조괴기·형입기 또는 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 또는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8474.1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20	파쇄기 또는 분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3	혼합기 또는 반죽기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 또는 모르타르 혼합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80	기타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1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5.2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21	광섬유 및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의 기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5.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5.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 또는 음료의 자동판매기)(화폐교환기를 포함한다)	
8476.2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76.29호부터 제8476.89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76.21호, 제 8476.81호 또는 제8476.89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8	기타 기계	
8476.81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76.21호, 제 8476.29호 또는 제8476.89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8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476.21호부터 제8476.81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용도의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7.10	사출 성형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20	압출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77.30	취입 성형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7.40	진공성형기 및 기타 열성형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7.5	기타 성형기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 또는 기타 이너튜브 성 형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7.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7.80	기타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7.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8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	
8478.10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8.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기(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479.10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20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30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 기계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4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5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79.60	증발식 에어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9.7	탑승교	
8479.71	공항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9.7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9.8	기타 기기	
8479.81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9.82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체 · 시프팅기 · 균질기 · 유화기 또는 교반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9.8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79.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금속(잉곳용의 것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10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20	주형 베이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30	주형 제조용의 모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4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성형용의 주형	
8480.4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50	유리 성형용의 주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80.60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0.7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0.7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1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 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 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감압밸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1.20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1.40	안전밸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1.80	기타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1.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8482.10	볼베어링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30	구형 롤러베어링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50	기타 원통형 롤러베어링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2.80	기타(볼/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2.9	부분품	
8482.91	볼 · 니들 및 롤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 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 루, 기어박스 및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 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 인트를 포함한다)	
8483.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3.20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3.30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한다),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3.40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 박스과 기타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3.50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3.6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3.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및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 전동용 엘 리먼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4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기타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 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커니컬 실	
8484.10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기타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4.20	메커니컬 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4.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 명시된 기계와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 명시된 기계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또는 기타 전기 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87.10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48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1.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 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1.3	기타 직류 전동기, 직류발전기	
8501.31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1.3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34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기타 단상의 교류전동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5	기타 다상의 교류전동기	
8501.51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6	교류발전기	
8501.61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1.62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1.63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1.64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1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 또는 세 미디젤엔진에 한한다)	
8502.11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2.12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2.13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3	기타 발전세트	
8502.31	풍력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40	전기 회전변환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3.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4.21호부터 제8504.50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	유입식의 변압기	
8504.21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4.10호 또는 제8504.22호부 터 제8504.50호 까지는 제외한 다) 또는 체약당 사국내에서 발생 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
8504.22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4.10호, 제 8504.21호 또는 제8504.23호부 터 제8504.50호 까지는 제외한 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4.10호부터 제8504.22호까 지 또는 제 8504.31호부터 제8504.50호까 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4.3	기타 변압기	
8504.31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04.32호부터 제8504.34호까 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4.10호부터 제8504.31호까 지 또는 제 8504.33호부터 제8504.50호까 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4.10호부터 제8504.32호까 지 또는 제 8504.34호부터 제8504.50호까 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4.10호부터 제8504.33호까 지, 제8504.40호 또는 제8504.50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정지형 변환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4.10호부터 제8504.34호까 지 또는 제 8504.50호는 제 외한다) 또는 체 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퍼센트 이 상일 것
8504.50	기타 유도자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4.10호부터 제8504.40호까 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 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 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	
8505.1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	금속제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5.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5.20	전자석 커플링 · 클러치와 브레이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와 일차배터리	
8506.10	이산화망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6.30	산화수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6.40	산화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6.50	리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06.60	에어징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6.80	기타 일차전지와 일차배터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6.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 여 부를 불문한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鉛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7.20	기타 연산 축전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7.30	니켈-카드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07.40	니켈-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50	니켈-수소 합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60	리튬-이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80	기타 축전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	진공청소기	
8508.1	전동기를 자장한 것	
8508.11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기타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8.19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08.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기타 진공청소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9.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자장(自藏)한 것에 한한다]	
8510.10	면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10.20	이발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0.30	모발제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0.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1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 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 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 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	점화플러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1.30	배전기, 점화코일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기타 발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원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12.20호 또는 제8512.30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2.20	기타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12.10호 또는 제8512.30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512.30	음향 신호용 기구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12.10호 또는 제8512.20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2.40	윈드스크린 와이퍼 · 제상기와 제무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2.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 · 축전지 · 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 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는 제외한다)	
8513.10	전등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3.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4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 실식의 것을 포함한다), 기타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8514.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의 노와 오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30	기타 노와 오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40	기타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 또는 광자빔식, 초음파식, 전자빔식, 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8515.1	납땜용의 기기	
8515.11	납땜용의 인두와 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2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3	금속의 아크(플라즈마아크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80	기타의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기난방기와 전기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및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 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6.2	전기난방기기와 전기토양가열기	
8516.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6.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6.3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	
8516.31	헤어드라이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6.32	기타 이용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6.33	손 건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6.40	전기다리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기타 오븐, 쿠키 · 조리판 · 보일링링 · 그릴러와 로스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7	기타 전열기기	
8516.71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72	토스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전열용 저항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 다),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타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는 제외하 다)	
8517.1	전화기 세트(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유선전화기 세트(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7.18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7.6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 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기지국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17.62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전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전기 음향증폭세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8519.20	동전·지폐·은행카드·토큰 또는 기타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전화응답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8	기타 기기	
8519.81	자기식 · 광학식 또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8519호 또는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픽업 카트리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 · 테이프 ·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2	자기식 매체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4	광학식 매체	
8523.41	기록이 안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5	반도체 매체	
8523.51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스마트카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송신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8517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8517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레이더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6.9	기타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7.1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527.12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13	기타 기기(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2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527.21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27.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27.9	기타	
8527.91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27.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4	음극선관 모니터	
8528.4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28.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5	기타 모니터	
8528.5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6	프로젝터	
8528.6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7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71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기타(단색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29.10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0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1.20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1.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1.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고정식 ·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	
8532.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2.2	기타 고정식 축전기	
8532.21	탄탈륨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2.22	알루미늄 전해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2.23	세라믹 유전체(단층)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2.24	세라믹 유전체(다층)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2.25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2.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2.30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2.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8533.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3.2	기타 고정식 저항기	
8533.21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3.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3.3	권선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	
8533.31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3.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3.40	기타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3.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4.00	인쇄회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전기식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억제기·플러그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535.10	퓨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2	자동차단기	
8535.21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4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53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전기식 기기(예: 개 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기 타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광섬 유 ·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8536.10	퓨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6.20	자동차단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6.4	계전기	
8536.41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6.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36.50	기타 개폐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6.6	램프홀더 · 플러그와 소켓	
8536.61	램프홀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6.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6.70	광섬유 ·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6.90	기타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 및 기타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 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7.20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538.1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 기반(제8537호의 물품 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9	전기식의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 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10	실드빔 램프유닛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9.2	기타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21	텅스텐 할로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9.22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이고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39.29호는 제 외한다) 또는 체 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퍼센트 이 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39.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8539.22호는 제 외한다) 또는 체 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퍼센트 이 상일 것
8539.3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9.32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9.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9.4	자외선 또는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	아크 램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9.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39.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	열전자관 ·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진공관 또는 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 · 수은아크정류관 · 음극선관 · 텔레비전용 촬상관)	
8540.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11	천연색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단색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20	텔레비전용 촬상관,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기타 광전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단색의 것),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의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기타 음극선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7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 · 속도변조관 · 진행파관 · 카시노트론)(그리드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	자전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0.7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0.8	기타 관	
8540.81	수신관 또는 증폭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0.8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0.9	부분품	
8540.91	음극선관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0.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1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2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	전력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사이리스터, 다이랙 및 트라이랙(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8542.3	전자집적회로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럭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메모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증폭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543.10	입자가속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543.20	신호발생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3.30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3.7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3.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8544.1	권선용 전선	
8544.11	동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4.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544.20	동축케이블과 기타 동축 전기도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4.4	기타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4.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4.60	기타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4.70	광섬유 케이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8545.1	전극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45.11	노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5.20	브러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8546.10	유리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6.20	도자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54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	
8547.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8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548.10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축전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54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86류 - 제89류)	
86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8601.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8601.20	전기식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2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탄수차	
8602.10	디젤 전기기관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3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4.00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자주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예: 공작차·기중기차·밸러스트tamper·트랙라이너·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5.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6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것은 제외한다)	
8606.10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6.30	자기양하식의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6.9	기타	
8606.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6.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6.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7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8607.1	보우기·비셀보우기·차축과 차륜 및 이들의 부분품	
8607.11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7.12	기타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6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2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30	축과 기타의 연결장치·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9	기타	
8607.91	기관차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8.00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되고 구조를 갖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에 한한다)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보행운전형 트랙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2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설상주행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2	기타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집적법으 로 30퍼센트 또 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일 것
8703.3	기타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집적법으 로 30퍼센트 또 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일 것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집적법으 로 30퍼센트 또 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일 것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집적법으 로 30퍼센트 또 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일 것
87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운송용 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4.2	기타[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4.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4.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8705.10	기중기차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30	소방차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90	기타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8707.10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기타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안전벨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708.2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08.30	브레이크와 서보브레이크,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기타 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08.7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08.9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 · 창고 · 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트럭,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1	차량	
8709.11	전기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709.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09.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0.00	전차와 기타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사이드카	
8711.1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 자전거(배달용 3륜 자 전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713	신체장애인을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타 다른 방식의 기 계구동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에 한 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4.20	신체장애인을용 차량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	기타	
8714.91	프레임과 포크 및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2	휠 림과 스포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3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는 제외한다) 및 프리휠 스프로켓 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안장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3	화물수송용의 기타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40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716.80	기타의 차량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716.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8	제88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00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 · 행글라이더와 기타 무동력 항공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802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 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와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8802.1	헬리콥터	
8802.11	자중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802.12	자중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802.20	자중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802.30	자중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2.40	자중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2.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3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	
8803.1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3.2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3.30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 슈트,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805	항공기 발진기어,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항공기 발진기어와 그 부분품,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805.2	지상비행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	모의 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805.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9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 · 화물선 · 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에 한한다)	
8901.10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 작된 것에 한한다), 각종의 페리보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8901.20	탱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1.90	기타 화물선과 화객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2.00	어선,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인플랫터블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903.9	기타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903.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8905.10	준설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5.20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5.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기타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군함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9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907	기타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 · 탱크 · 코퍼댐 · 부잔교 · 부표 및 수로부표)	
8907.10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90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8908.00	선박과 기타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 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 - 제92류)	
90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의료 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 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 프리즘 · 반사경과 기타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9001.10	광섬유 · 광섬유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1.20	편광재료제의 쉬트와 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1.30	콘택트렌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1.40	유리제의 안경렌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1.50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다)	
9002.1	대물렌즈	
9002.11	카메라용·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2.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2.20	필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002.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3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용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9003.1	테와 장착구	
9003.11	플라스틱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03.19	기타 재료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03.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선글라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04.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05	쌍안경·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기타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쌍안경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5.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5.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	사진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10	인쇄제판용 사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6.3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또는 내과용 또는 외과용으로 특수 설계 제작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6.40	즉석인화사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6.5	기타 사진기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6.52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6.53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6.5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6.6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6.6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6.9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	카메라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7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007.10	촬영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007.20	영사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07.9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	촬영기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07.92	영사기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08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9008.50	프로젝터, 확대기 및 축소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08.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네가토스코우프, 영사용 스크린	
9010.10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 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 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실용의 기타 기기, 네가토스코우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0.60	영사용 스크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0.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9011	복합 광학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9011.10	입체현미경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1.20	기타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1.80	기타 현미경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1.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2.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3.10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3.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3.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 기타 항행용 기기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014.2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4.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4.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 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 또는 지구물리학용기기 (컴퍼스는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5.10	거리측정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5.20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5.30	수준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5.40	사진측량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5.80	기타의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5.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6.00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 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의 길이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17.20	기타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9017.30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 와 게이지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7.80	기타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7.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 단기기 · 기타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심전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14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20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3	주사기·바늘·카테터·케놀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32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4	치과용의 기타 기기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기타의 치과기기를 부착하 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9018.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50	안과용의 기타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8.90	기타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 · 산소흡입기 · 에어로졸치료기 · 인공호흡기 또는 기타 치 료용 호흡기기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19.20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 치료용 호흡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0.00	기타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 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 절치료용의 부목 및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및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 기기	
9021.10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1.2	의치와 치과용품	
9021.21	의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1.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1.3	기타 인조의 인체 부분	
9021.31	인조관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1.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1.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2.13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2.19	기타 용도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2.2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2.29	기타 용도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2.30	엑스선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다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른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 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금속 시험용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4.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4.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 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 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9025.1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25.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5.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5.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5.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제9014호 · 제9015호· 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기기는 제외한다)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026.20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6.80	기타 기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6.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 사한 것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열·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툼	
9027.1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7.30	분광계·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7.50	기타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7.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7.90	마이크로툼,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기체용 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8.20	액체용 계기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9028.30	전기용 계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28.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9	적산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우프	
9029.10	적산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우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29.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30	오실로스코우프 ·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9030.1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0.20	오실로스코우프와 오실로그래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0.3	전압 · 전류 · 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9030.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기타 기기(예: 누화계 · 계인측정 계 · 만곡률계 · 잡음전압계)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0.8	기타 기기	
9030.82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0.8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31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 윤곽 투영기	
9031.10	균형시험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31.20	테스트벤치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31.4	기타 광학식의 기기	
9031.41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 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31.4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31.80	기타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31.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10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2.20	매노우스타트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2.8	기타의 기기	
9032.81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2.8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032.90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033.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1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101.1	손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1.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1.2	기타 손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1.21	자동권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1.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1.9	기타	
9101.91	전기구동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1.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2.1	손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2.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2.2	기타 손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2.21	자동권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2.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2.9	기타	
9102.91	전기구동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2.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3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전기구동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9104.00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5	기타 클록	
9105.1	자명종시계	
9105.11	전기구동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5.2	벽 시계	
9105.21	전기구동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5.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5.9	기타	
9105.91	전기구동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시계의 무브먼트나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 · 기록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 · 타임레코더)	
9106.10	타임레지스터, 타임레코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7.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9108.1	전기구동식의 것	
9108.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8.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8.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8.20	자동권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9109.10	전기구동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910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9110.1	휴대용시계의 것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0.12	불완전한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0.19	러프 무브먼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0.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	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20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80	기타의 케이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케이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2.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3	휴대용시계줄 · 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3.20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11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114	기타 시계의 부분품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14.30	문자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14.40	지판과 브리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11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	제92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하프시코드와 기타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업라이트 피아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1.20	그랜드 피아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2	기타 현악기(예: 기타 · 바이올린 · 하프)	
9202.10	활을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5	관악기(예: 건반이 있는 파이프 오르간 · 아코디언 · 클라리넷 · 트럼펫 · 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오르간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 르간은 제외한다)	
9205.10	금관악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6.00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넷트 · 마라카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 · 기타 · 아 코디언)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온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20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208	뮤지컬박스 · 페어그라운드오르간 ·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 기 계식 자명조 · 뮤지컬소오와 기타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각종의 데코이 쿨, 휘슬 · 호각과 기타 입 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뮤지컬박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 · 디스크와 롤), 박절기 · 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 律管)	
9209.30	악기의 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9.9	기타	
9209.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9.92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9.94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209.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19부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93	제93류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무기(리볼버 · 피스톨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	포병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 및 박격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9301.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2.00	리볼버와 피스톨(제9303호 또는 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3	기타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의 산탄총과 라이플 · 총구장전화기 · 베리식 피스톨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기타 장치 · 공포탄용 피스톨 및 리볼버 · 무통도살기 · 줄발사총)	
9303.10	총구장전화기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3.2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3.3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라이플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4.00	기타 무기(예: 스프링총, 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피스톨, 경찰 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에 한한다)	
9305.10	리볼버 또는 피스톨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5.20	산탄총 또는 라이플의 것(제9303호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5.9	기타	
9305.91	제9301호의 군용무기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 의 부분품, 탄약·기타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9306.2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	탄약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6.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6.30	기타 탄약과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6.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307.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제20부 잡품(제94류 - 제96류)	
94	제94류 가구, 침구·메트리스·메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 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와 램프,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 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 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401.2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1.40	침대겸용의자(가든시트 또는 캠핑용 장비는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1.5	등나무 · 버드나무 · 대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1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1.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1.6	기타 의자(프레임이 목제인 것에 한한다)	
9401.61	의자의 속 · 용수철 · 카바등을 댄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1.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7	기타 의자(프레임이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401.7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등을 댄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7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80	기타 의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뒤로 젖히고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2.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9403	기타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금속제가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3.20	기타 금속제가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3.30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목제가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3.40	주방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목제가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3.50	침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목제가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3.60	기타 목제가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3.70	플라스틱제의 가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	기타 재료제의 가구(등나무·버드나무·대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제의 것을 포함한다)	
9403.81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4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누비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 및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9404.10	매트리스 서포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404.2	매트리스	
9404.21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404.29	기타 재료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404.30	침낭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4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405.10	산데리아와 기타 천장용 또는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5.30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조명세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5.40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5.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5.60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5.9	부분품	
9405.91	유리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405.92	플라스틱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5.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406.00	조립식 건축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	제95류 완구·게임용구 및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의 퍼즐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504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 또는 실내 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20	각종의 당구용구와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4.30	기타의 게임(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504.40	오락용 카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4.50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504.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505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5.90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폴용구	
9506.1	설상스키와 기타 설상스키용품	
9506.11	스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12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2	수상스키·파도타기널판·세일보드와 기타 수상운동용구	
9506.21	세일보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3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	
9506.31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퍼센 트 이상일 것
9506.32	공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40	탁구용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5	테니스용·배드민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506.51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준
9506.5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6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	로온테니스 공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6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7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9	기타	
9506.91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6.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7	낚싯대·낚시바늘과 기타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유인용 새(제9208호 또는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 또는 사격 용구	
9507.10	낚싯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7.20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7.30	낚시 릴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7.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순회서커스용·순회동물원용 용품, 순회극장용의 용품	
9508.10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508.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	제96류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사슴뿔·산호·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602.00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 · 스테아린 · 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3	비 · 브러시(기계 ·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 모프와 깃 먼지떨이, 비 또는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으며 솔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스퀴지(롤러스퀴지는 제외한다)	
9603.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3.2	칫솔 · 면도용 브러시 · 헤어브러시 · 네일브러시 · 아이래쉬 브러시 및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3.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3.30	회화용의 붓 · 필기용의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붓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3.40	페인트용 · 디스토퍼용 · 바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3.50	기타 브러시(기계 ·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3.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4.00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5.00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또는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6	단추 · 프레스파스너 ·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 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블랭크	
9606.10	프레스파스너 ·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6.2	단추	
9606.21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 이상일 것
9606.22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6.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6.30	단추의 몰드와 기타단추의 부분품, 단추블랭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9607.1	슬라이드파스너	
9607.11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7.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7.2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스틸로그래프 펜과 기타 펜, 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볼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8.20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8.30	만년필·스틸로그래프 펜과 기타의 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6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8.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6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9	기타	
9608.91	펜촉과 닙포인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8.9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9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의 묵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속에 심을 넣은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9.20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09.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0.00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1.00	일부인·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수동식의 컴포징 스틱 및 컴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2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달리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펠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상자들이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612.10	리본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2.20	잉크 패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3	담배ライター와 기타ライター(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ライター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20	포켓용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80	기타ライター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90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4.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 또는 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5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9615.1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	경화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5.19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5.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6.20	화장용 분첩과 패드	4단위 세번변경 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617.00	보온병과 기타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그 부분품 (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8.00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 용의 움직이는 전사용품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619.00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97류)	
97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전적으로 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데생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와 이 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회화·데생과 파스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7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702.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703.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704.00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봉투·우편엽서류 와 이와 유사한 것(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705.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 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9706.00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